

통합방송법 제정입법의견

1999. 10

研究者：宋永仙(研究員)

한국법제연구원

1948

1949

1950

목 차

I. 서론	5
1. 문제의 제기	5
2. 방송환경의 변화	5
3. 방송관계법의 연혁	7
II. 방송관계법의 현황	11
1. 현행방송관계법의 구조	11
1-1. 지상파방송(방송법과 전파법)	11
1-2. 종합유선방송(종합유선방송법)	12
1-3. 중계유선방송(유선방송관리법)	13
1-4. 위성방송(전파법상의 관련규정)	14
2. 방송관계법 구조개편의 필요성	14
3. 방송관계법 구조개편의 기본방향	16
III. 주요쟁점	17
1. 방송위원회	17
1-1. 방송위원회의 위상	17
1-2. 방송위원회의 구성	18
1-3. 방송위원회의 직무	19
2. 방송사업자 개념 및 사업권 허가절차	22
2-1. 방송의 개념	22
2-2. 사업권 허가절차	24
3. 방송사업자의 소유제한	25
3-1. 외국자본의 소유제한	25
3-2. 대기업 및 언론사의 소유제한	27
4. 방송발전기금(공익자금)	28
4-1. 방송발전기금의 용도	28
4-2. 자금조성비율	29

5. 방송편성권의 독립	30
6. 공영성 강화 방안	30
6-1. KBS의 공공성 확보 방안	31
6-2. MBC의 위상 정립방안	32
6-3. EBS의 위상 정립방안	32
6-4. 지역민방	32
6-5. 공공채널의 구조 개혁	33
7. 케이블TV와 중계유선방송	34
7-1. 케이블TV	34
7-2. 케이블TV와 중계유선방송의 교차소유 및 경영제한 방안	35
7-3. 케이블TV와 중계유선방송의 통합	36
7-4. 위성방송과의 관계	37
8. 위성방송	41
8-1. 위성방송의 개념	41
8-2. 위성방송사업자 구도 문제	43
8-3. 위성방송사업자관련 문제	43
9. 방송심의제도	46
9-1. 현행 심의제도의 주요 문제점	46
9-2. 방송 심의제도의 개편방향	47
10. 시청자주권	52
10-1. 시청자 권익보호	53
10-2. 시청자위원회	53
10-3. 참여 및 반론권	54
10-4. 국민주방송	54
10-5. 기타	54
11. 뉴미디어와 디지털방송	55
11-1. 방송환경의 변화	55
11-2. 뉴미디어 정책	55
IV. 결 론	59
〈참고자료〉 현행방송법과 여당개정안의 대비표	61

I. 서론

1. 문제의 제기

우리의 방송환경은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한 케이블TV, 위성방송, 주문형 비디오 등 뉴미디어의 출현으로 급속히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방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논의만 무성한 상태에서 담보상태에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방송현실을 보면 무궁화 위성을 띄어 놓은 지 4년여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만 낭비한 채 여전히 시험적인 위성방송만을 계속하고 있을 뿐이다.¹⁾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을 목적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수용해 온 케이블TV 방송도 중계유선 방송과의 갈등과 IMF 경제위기로 기인한 종합유선방송국과 프로그램공급업자의 부도 등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고, 지역민방 대부분도 경영악화로 인한 적자누적에 시달리고 있는 등 어려운 방송환경에 처해 있다. 동시에 외국 방송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이중삼중의 곤경에 처해있다.

더구나 통합방송법 제정이 정치적인 이유로 지연되고 있어서 이러한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난항속에서 새로 제정될 방송법은 변화하는 방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의 방송현실을 감안한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방송은 매스 미디어로서 여론형성과 의사결정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방송은 우리의 문화, 특히 영상문화 발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향후 인터넷 TV, 주문형 비디오 등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예견되고 있다. 통합방송법이 방송문화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방송시장 개방과 관련해서 국내 방송의 경쟁력 강화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 방송환경의 변화

통신과 방송영역은 전통적으로 그 기술적 차이 및 보호법익의 차이에 기초하

1) 통신·방송 복합위성인 무궁화위성 1호는 1995년 8월 5일 발사되었다.

여 엄격하게 분리·규율되었다. 예컨대, 종래 통신은 특정인간의 쌍방향 송수신(1대1)을, 방송은 공중에 대하여 직접 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향 송신(1대N)을 의미하였던 바, 이러한 기술적 차이에 따라 통신은 전송내용의 비밀보호 및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에 초점을 맞추어 하드·소프트를 분리 운영함과 동시에 요금, 접속조건, 시장경쟁, 전송매체의 표준화 등을 중심으로 한 규제가, 방송은 주파수의 희소성 및 사회적 영향력에 초점을 맞추어 하드·소프트를 겸영함과 동시에 방송내용, 방송사업자의 소유·참여 제한 등을 중심으로 한 규제가 강조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디지털화·광역화·쌍방향화라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통신·방송전송로의 증가 및 공유화를 촉진시켰고, 이와 더불어 새로운 통신·방송의 중간영역적 서비스들이 출현함에 따라서 종래 통신과 방송영역을 엄격하게 구분·규율하던 법제도 및 법질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각 국가들은 통신·방송관계법의 체계와 규제기구는 달리하지만, 일관된 정책의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즉, 그들은 통신·방송관계법의 개정이나 새로운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그 나라의 법체계와 정책방향 등에 맞는 방식을 채택하여 통신·방송사업자간의 융합을 허용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서비스의 융합촉진을 통하여 수신자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매체의 소유제한을 완화하고, 새로운 매체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수신자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고, 수신자에 대한 서비스 공급기회의 확대를 기본으로 하여 수신자주권에 입각한 시장경쟁원리에 의하여 새로운 매체를 규율하고 있다.²⁾ 다시 말해서 각 국가들은 개방화·자유화되어 가는 통신시장에서 자국의 이익보호와 세계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또한 방송의 디지털화를 통한 방송사업의 활성화, 방송시장의 진입·소유규제의 완화를 통한 방송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의 고도화, 콘텐츠산업의 육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의 추진과 법제도의 정비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도 현재 모든 종류의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보통신산업을 육성시키고, 통합방송법을 제정하여 다매체·다채널 시대에 대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통신·방송관계법 중에서 통신·방송융합의 촉진에 방

2) 김대호, "방송법과 뉴미디어", 경희법학, 제32권제1호, 경희법학연구소, 1997.8.

내지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이들을 해소하기 위한 법정비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3. 방송관계법의 연혁

1963년 12월에 제정된 방송법은 지금까지 방송의 공공성을 중심으로 지상파방송을 규율하고 있으며, 다른 방송관계법들의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1991년 12월에 제정된 종합유선방송법은 새로운 매체로서의 CATV도입을 위하여 법제화되었다. 특히, 이것은 지상파방송과 다른 방송이념 및 규제기관의 규제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률로 입법화되었다. 즉, 종합유선방송법은 방송법의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방송법과 달리 방송사업자개념을 도입하여 방송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것은 방송이 규제의 대상만이 아니라 산업적 자원임을 인식한 것으로서 방송에 대한 접근방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61년에 제정된 유선방송관리법은 중계유선방송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영역의 일부로 간주한 결과, 현재 종합유선방송과 공존하고 있다.

1990년대 접어들면서 우리 정부의 1980년대부터 시작된 독자적인 위성보유구상이 구체화됨과 동시에 뉴미디어로서의 위성방송 도입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방송매체별로 구분되어 규정되고 있는 현행 방송관계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통합하는 통합방송법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예컨대, 1993년 그 당시의 공보처는 구체신부가 제안한 '위성통신법(안)'에 대응하여 '위성방송법(안)'을 제안함으로써, 처음에는 기존의 방송관계법과 다른 별도의 위성방송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고자 하였다. 즉, 1993년 7월에 공보처는 기존의 방송법을 모태로 하여 위성방송의 사업자허가 및 방송편성 등의 위성방송의 특성을 살린 새로운 '위성방송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공청회에 회부하였다. 그러나 당시 공청회의 지배적인 의견은 공보처가 제안한 '위성방송법(안)'의 전반적인 내용이 기존 방송법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별도의 법을 제정하기보다는 기존의 방송법을 개정하여 그곳에 명시된 방송의 정의에 위성방송의 개념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유사한 내용의 법을 공보처와 체신부가 별도로 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두 법안은 모두 국회에 상정되지 못하였다.

그 다음해인 1994년, 공보처는 위성방송법의 제정을 통한 방송법개정을 들

러싼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초기의 소극적 입장에서 벗어나 방송관계법의 전면적인 개정이라는 적극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이와 더불어 공보처는 방송관계법의 개정에 있어서 정부의 주도적 역할에 따른 사회적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 방송개발원 등의 참여를 통한 방송정책의 수립 및 방송관계법의 개정방향을 모색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택하였다. 즉, 당시의 공보처는 방송위원회, 방송개발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5년간 실현 가능한 방송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선진방송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기초로 그 동안 제기된 방송관계자 및 단체의 의견을 종합·정리하여 1995년 7월에 국가의 중장기방송청사진인 <선진방송 5개년 계획(안)-1995년~1999년->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공보처는 이 계획안을 토대로 1995년 9월에 통합방송법(안)을 마련, 동년 10월 한달 동안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후, 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동년 11월에 <급변하는 방송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종전의 방송법과 종합유선방송법을 통합하여 이를 단일방송법체제로 하며, 규제완화를 통하여 뉴미디어·멀티미디어시대에 부응하는 한편,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확고히 보장함으로써 민주적 여론형성과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취지로 하는 방송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는 각 기관의 공식의견을 개진하였고, 종합유선방송위원회 노동조합 또한 위원회의 공식의견과는 별도의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한국프로듀서연합회 역시 나름대로의 입장을 공개세미나(1995.9.25)를 통하여 발표하였다. 또한 동년 12월 4일에는 통합방송법의 국회통과저지를 위한 방송4사의 파업찬반투표가 실시되기도 하였다. 또한 입법예고의 시점을 전후하여 정당 측에서도 많은 관심이 표출되었는데, 동년 10월 9일에 국민회의 의원명의로 방송법쟁점에 대한 정책대안이 제시되었고, 당시의 야당인 국민회의·민주당·자민련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동년 11월 22일에 단일 방송법(안)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이것은 통합방송법과 관련한 여러 차례의 공청회 개최 및 관련단체의 의견청취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을 토대로 한 방송법 초안을 마련하고, 47개의 시민단체·종교단체·노동조합·직능단체 등의 연대모임인 방송개혁국민회의, 한국프로듀서연합회, 방송위원회 등과 수정작업을 거쳐 최종법안을 확정된 것이다.³⁾ 결국, 야당의 단일 방송법(안)의 제출과

3) 이상식, "케이블TV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폐기된 통합방송법을 중심으로-", 연세커뮤

더불어 그 심의과정에서의 여야간의 의견대립으로 인하여 공보처의 1995년 방송법(안)은 폐기되었다.

그래서 공보처는 그 다음 해, 1996년 11월 중전의 방송법(안)의 내용을 일부수정·보완하여 대기업과 언론사의 위성방송 참여를 허용하고,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법안을 정부안으로 최종 확인하여 입법화시키려 하였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1997년 말의 정권교체와 더불어 통합방송법제정은 신정부의 몫으로 넘어왔고, 1998년 2월말의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 공보처가 폐지됨과 동시에 그 방송행정업무는 문화관광부로 이관되었으나 실질적인 통합방송법제정은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정부 여당인 '국민회의'는 1998년 초에 통합방송법초안을 마련하여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1998년 8월에는 통합방송법(안)을 마련하였다. 야당인 한나라당도 통합방송법(안)을 마련하였으나 '방송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여, 결국은 다음 기회로 연기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통합방송법의 제정이 어려웠던 주된 이유는 방송이념의 대립(공영모델과 산업모델의 대립)과 뉴미디어방송 도입과정의 복잡성에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이것은 기존의 방송에 대한 사회적 논쟁의 핵심이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상업방송의 도입에 따른 '방송의 공익성 확보'라는 사회적 가치관의 갈등에 머물렀으나 다채널·다미디어 시대의 방송은 기존의 사회적 가치관 이외에도 방송의 경쟁력 및 다양성 확보, 방송산업의 육성 등과 같은 상호 양립되기 어려운 사회적 가치관의 조화를 요구하고, 또한 정부의 정책과정의 개방화로 인하여 기존에는 정책형성과정에서 배제되었던 이해집단들(예컨대, 재야언론단체 및 방송노조집단 등)이 이제는 정책결정과정과 집행단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기존의 방송관련 이해집단들(예컨대, 정치인, 방송종사자) 이외에도 신문사, 일반기업 등이 새로이 조직화되어 그들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이 통합방송법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정에 기인하고 있다.⁴⁾

티케이션즈,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1996 No.5, 1996.4.

4) 황상재, "문민정부 방송정책의 문제점과 교훈-통합방송법의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여의도클럽회보 통권 제15호(1997.12), 여의도클럽, 67~68면. 황상재 교수는 이외에도 통합방송법 통과를 저해하는 요인으로서 그 당시 공보처의 입법의도에 대한 불신, 공보처와 정보통신부간의 부처이기주의 등을 지적하고 있다.

II. 방송관계법의 현황

현행 방송관계법은 방송매체별·사업자별로 구분되어 별개의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즉, 지상파방송을 규율하는 방송법 및 전파법, 종합유선방송을 규율하는 종합유선방송법, 중계유선방송을 규율하는 유선방송관리법으로 존재하고, 위성방송을 규율하는 법률은 없다. 그리고 방송법과 종합유선방송법은 문화관광부가, 전파법과 유선방송관리법은 정보통신부가 각각 관할하고 있다.

1. 현행방송관계법의 구조

1-1. 지상파방송(방송법과 전파법)

방송법은 방송의 공공성과 규제를 중심으로 지상파방송을 규율하고 있으며, 전파법은 무선국의 일종인 방송국의 허가와 관련하여 지상파방송을 규율하고 있는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법은 '방송'을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과 교양·음악·오락·연예 등을 공중에게 전파함을 목적으로 방송국이 행하는 무선통신의 송신"(동법 제2조제1호)으로 규정하여, 방송의 개념을 그 내용물과 무선통신으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 방송법은 '방송국' 개념에 대하여 전파법에 의한 '무선국'의 정의를 그대로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2조제3호), 이러한 방송국의 경영과 사업의 주체는 '방송법인'이라는 별도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동법 제2조제4호). 예컨대, 전파법에 의한 무선국은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전파법 제2조제5호)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의 사회적·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개념이 아니라 물리적 설비중심의 개념이다. 또한 무선국의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공사설계가 전파법 제3장이 정한 기술기준에 있을 것, 주파수의 할당이 가능할 것, 당해 업무를 유지할 만한 재정적 기초가 있을 것,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개설기준에 합치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전파법 제6조제3항). 특히, 방송업무(또는 위성방송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으로서의 방송국은 연주소를 갖추어야 한다(전파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5호). 여기에서 '연주소'란 "방송사항의 제작·편성·조정

에 필요한 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전파법시행령 제2조제98호). 결국, 지상파방송은 무선국허가와 연주소, 즉 하드와 소프트웨어를 갖춘 자만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2. 종합유선방송(종합유선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은 지상파방송을 규율하는 방송법과 달리 제한적 상업성의 논리를 수용하여 종합유선방송을 규율하고 있는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합유선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은 "영상(문자 및 정지화상을 포함한다)·음성·음향등을 유선전기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수신자에게 송신하는 다채널방송"을 말하는데(동법 제2조제1호), 이것은 종합유선방송국, 프로그램공급업자, 전송망사업자라는 3종류의 사업자로 구분된다.

둘째, 종합유선방송국(SO)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이 허가한다.

셋째, 프로그램공급업자(PP)는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문화관광부장관이 허가한다.

넷째, 전송망사업자(NO)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는다. 이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동법 제17조).

다섯째, 종합유선방송의 활성화를 위한 겸영금지규정이 완화되어 종합유선방송국·프로그램공급업·전송망사업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와 시장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상호겸영이 가능하고(종합유선방송법 제4조제1항), 종합유선방송국의 상호겸영(MSO)은 종합유선방송구역안의 인구수와 시장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며, 프로그램공급자의 상호겸영(MPP)도 시장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다(동법 제4조제3항).

여섯째, 신문사·통신사 및 대기업은 종합유선방송국의 주식 또는 지분을 총수의 33/100이내에서 소유할 수 있다(동법 제4조제4항, 제5항). 또한 누구나 프로그램업종 보도에 관한 프로그램공급업(보도프로그램업)에 대하여는 30/100이내에서만 소유할 수 있다(동법 제4조제7항).

법은 방송의 수평적·수직적 겸영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일곱째, 위 다섯째와 여섯째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동법 제4조

제10항).

여덟째,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아닌 자,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종합유선방송국·프로그램공급업·전송망사업을 할 수 없다(동법 제5조제1항).

아홉째, 종합유선방송을 통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종합유선방송국에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분쟁의 중재 및 그 절차, 심판 등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한다(동법 제45조).

1-3. 중계유선방송(유선방송관리법)

유선방송관리법 또한 지상파방송을 규율하는 방송법과 달리 제한적 상업성의 논리를 수용하여 중계유선방송을 규율하고 있는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선방송관리법상 '유선방송'은 "유선전기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음성·음향 또는 영상(문자 및 정지화상 포함)을 수신자에게 송신하는 것으로서 중계유선방송과 음악유선방송"을 말하는데, 그 가운데 '중계유선방송'은 "전파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방송을 하는 무선국(방송국)의 방송을 수신하여 중계송신하는 것"을 의미한다(동법 제2조제1호, 제2호).

둘째, 유선방송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동법 제3조제1항).

셋째, 유선방송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선방송사업허가신청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신청을 받은 정보통신부장관은 유선방송시설 설치계획이 타당한지, 유선방송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가 있는지 유선방송사업의 지역적·사회적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넷째, 유선방송사업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용약관을 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만 유선방송을 할 수 있다.

다섯째, 외국인,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나 외국정부는 기부금·찬조금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재산상의 출연을 하지 못한다.

여섯째, 유선방송사업자 또는 그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유선방송시설을 설치함

에 있어서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전송망사업자의 전송선로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동법 제20조).

1-4. 위성방송(전파법상의 관련규정)

위성방송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은 없지만, 방송위성업무, 우주국 등과 관련하여 전파법이 규율하고 있는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파법상 '무선국'은 "방송청취를 위하여 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 무선전신·무선전화 기타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전기적 시설인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를 말한다(동법 제2조제4호, 제5호), 그리고 전파법시행령은 무선국이 행하는 업무의 분류와 관련하여 방송업무와 위성방송업무를 구분한다(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제18호).

둘째, 무선국의 허가를 받은 자(시설자)는 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무선국의 무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운영하거나 타인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동법 제29조의6).

셋째, 무선국의 허가신청은 무선국의 분류에 따라 송신설비의 설치장소별로 하여야 하고, 우주국 또는 지구국에서 종별 2이상의 무선국 업무를 함께 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종별 2이상의 무선국의 업무를 함께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무선국으로 허가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항).

우리나라의 경우, 무궁화위성을 통한 위성방송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현재 무궁화위성(우주국)을 전기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이 소유·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무선설비(중계기)를 임차하여 실시할 수밖에 없다. 현행 방송관계법의 구조하에서는 위성방송을 위한 새로운 방송사업자 개념의 도입이 불가피하다.

2. 방송관계법 구조개편의 필요성

오늘날의 방송환경은 기존의 방송질서와는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현행 방송관계법의 구조개편을 요구하고 있다.⁵⁾

5) 김창규, 위성방송법제의 과제와 입법방향, 한국법제연구원(1998.7), 68~69면.

첫째, 뉴미디어의 발달과 방송·통신의 융합화 등은 방송개념 자체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예컨대, 종합유선방송망 및 위성방송망을 이용한 공중과 이외 주파수의 분배방식, 쌍방향의 방송신호를 전달하는 방식 등이 창출됨으로써, 이들을 새로운 방송개념에 수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공중을 대상으로 방송신호를 전달하는 무선통신, 일방적 전송을 특징으로 하는 기존의 방송개념에 대한 확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정보화사회의 확장, 방송시장의 개방화·국제화에 따라 기존의 방송개념은 문화적, 정치적 함의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경제적, 기술적, 산업적 함의를 가진 사회적 단위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셋째, 방송서비스산업의 발달, 방송의 다원화현상은 그 규제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즉, 다매체·다채널시대의 도래는 기존의 사전규제에 대한 정당성을 상실케 하고 있다.

넷째, 새로운 방송환경의 변화에 따른 다매체의 등장, 그리고 이에 따라 등장하는 다양한 방송사업자 상호간 및 수신자와의 관계에서 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것이 향후 예상되기 때문에 방송법치주의관점에서 그것들을 정책적으로 조화롭게 조정할 수 있는 방송법제의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방송관계법 구조개편의 필요성에 부응하여 우리 정부는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할 때에 궁극적으로는 통신관계법과 방송관계법을 통합한 법제의 마련이 필요하지만, 과도기적 변혁기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방송현실을 고려할 때에 방송매체별로 나누어 규정되어 있는 현행 방송관계법을 우선적으로 통합하는 입법방식을 채택하였다. 즉, 우리 정부는 1995년부터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등을 포괄하는 통합방송법의 제정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통합방송법은 뉴미디어의 도입에 따른 방송의 이념, 방송사업자의 개념, 방송사업자의 허가절차, 방송산업의 소유와 참여, 방송규제기구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첨예한 이해대립에 봉착하여 지금까지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위성방송과 관련하여 그 근거법이 마련되지 못함으로써 위성방송사업자의 선정 및 채널배분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미 1995년 8월과 1996년 1월에 각각 발사된 무궁화위성 제1호기·제2호기가 공전하고, 위성방송산업을 위축시켜 막대한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 예컨대, 사업자측면에서는 무궁화위성 제1호기·제2호기의 방송중계기를 공전시킴으로

써, 하루 평균 2,100만원(기회비용환산의 경우 4,800만원)의 투자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방송산업의 국가경쟁력측면에서도 상당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이것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이미 고성능 통신위성을 통한 고화질·고음질의 다채널위성방송서비스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2,000년대에는 700여개의 위성채널이 출현할 예정이고, 아울러 국제적으로 방송시장의 개방화도 거세게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방송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디지털위성방송 수신기시장의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며, 무차별적으로 대량 유입되고 있는 외국위성방송에 대한 효율적 대처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무궁화위성 방송사업의 정상제도진입을 위한 통합방송법의 조속한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3. 방송관계법 구조개편의 기본방향

오늘날 급변하는 방송환경을 수용하고, 동시에 뉴미디어의 도입에 따른 방송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마련하게 될 통합방송법은 그 제정시에 다음의 정책사항이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⁶⁾

경쟁과 균형의 방송체계의 정립이 그것으로, 그동안 우리 방송은 지상파방송 중심의 독과점 체제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방송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정보의 제공과 방송프로그램 선택의 기회 확대를 위해 지상파 중심 구조에서 지상파, 유선, 위성방송이 상호 보완되고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방송매체간 균형발전 정책을 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상파방송, 유선방송, 위성방송 등 매체별로 공영·민영방송이 공존하는 체제를 유지하는 일, ▲지상파방송은 수신료나 광고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무료방송을 유지하고 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은 유료방송으로 발전시키는 방안, 그리고 ▲위성방송의 발전 등으로 방송의 국제화가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방송과 국제방송이 전체로서 상호보완되는 구조를 구축하는 정책이다.

6) 이상훈·이만제·강태환, 뉴미디어융합발전을 위한 매체별 정책과제연구, 한국방송개발원(1997.11), 201~204면을 참조.

Ⅲ. 주요 쟁점

1. 방송위원회

1-1. 방송위원회의 위상

방송위원회는 1980년 '언론기본법'에 의거해 1981년 3월 7일 설립되었으며, 1987년 제정된 '방송법'에 의하여 한국의 독립된 방송규제기구로서의 기능과 위상을 부여받게 되었다.

현재 위원회는 방송관계 전문가 및 학식,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9인의 위원 중 3인은 국회의장이,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자를 임명한다.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공성 유지와 방송내용의 질적 향상을 임무로 맡고 있으나, 직무면에서는 방송정책권이 없는 단순 심의기구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실제 운영면에서도 정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프랑스의 CSA(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등 선진국의 방송규제기구는 실제 행정부처로부터 직무상 독립되어 있으며, 의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구조인바, 우리의 경우에도, 직무상 정부부처로부터 독립하여 방송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정책수립 및 규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1) 독립규제위원회

기본적인 정책은 행정부처에서 말되, 방송위원회를 민간기구화하고 기능을 강화시켜 방송사업의 인허가와 관련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⁷⁾

행정적 기능뿐 아니라 준입법적, 준사법적 기능까지 아울러 가진 독립적 지위를 가지도록 하고, 방송정책조정을 위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위해서 '방송정책위원회(가칭)'를 운영할 수 있다. 방송위원회의 월권행사 및 직무수행의 결함 등은 국회의 감사를 통하여 견제하거나 책임을 묻도록 한다.⁸⁾

7) 이경재, 21세기 방송연구소 주최 '새방송 정책 종합 워크숍' 자료집, 1998.4.17.

8) 유재천, 한국방송인총연합회 토론회 자료집, 1999.7.22.

2) 합의제 행정위원회

합의제 기구는 특정인의 독단을 견제하고 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는 바, 방송위원회의 위상은 합의제 행정기구로 한다.

방송위원회는 방송에 대한 규제 및 감독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그 관할구역이 전국에 미친다는 점에서 행정기관이자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⁹⁾

3) 혼합형

방송위원회는 행정부처로부터 독립된 독립규제위원회의 성격을 지니되, 실정 법상 '합의제 행정기구'의 형태를 취하도록 한다. 방송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의안제출을 건의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하도록 한다.¹⁰⁾

1-2. 방송위원회의 구성

독립적이고 공정한 방송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방송의 독립성·공정성·공공성 확보의 관건이라 할 것이다.

위원회의 위원 수와 선임방식을 선택함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위원회의 직무에 견주어 적합한 자질을 갖춘 위원의 수를 산출하는 것이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국회'가 방송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되 대표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¹¹⁾

위원선임 방식으로는 ①방송위원회가 추천분야의 각 단체로부터 위원 후보를 복수로 추천받아 추천된 인사중에서 대통령이 구성하여 국회의 일괄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방식과 ②국회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규정된 분야의 인사를 추천받아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하는 방식 등이 있다.

이하는 여·야 및 96년에 구성되었던 "국회제도개선특위"의 방송위원회 구성 방식을 대비한 것이다.

9) 정동채, 한국방송인총연합회 토론회 자료집, 1998.7.22.

10) 방송개혁위원회 공청회 자료집, 1999.2.22.

11) 방송개혁위원회 공청회 자료집, 1999.2.22.

〈방송위원회의 구성〉

여당안('99)	한나라당안('98)	국회제도개선특위안('96)
- 9인 : 대통령 3인, 국회 3인,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3인 지명 -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4인의 상임위원 - 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부위원장 및 2인의 상임위원은 위원회 동의를 얻어 위원이 임명 - 위원 임기는 3년(1회 연임 가능)	- 9인 : 6인은 국회, 3인은 대통령이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 위원장, 부위원장 3인의 상임위원 - 위원장은 호선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위원장 2인은 위원장을 내지 아니한 국회 교섭단체중 원내 교섭단체 순으로 추천자를 임명 - 위원 임기는 3년(1회 연임 가능)	- 14인 : 대통령 7인, 7인은 원내교섭단체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4인의 상임위원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2인의 상임위원은 국회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제1당과 제2당이 추천한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1-3. 방송위원회의 직무

현행 방송법에서는 방송에 관한 기본정책권 등이 정부에 있고 방송위원회의 직무는 그 하위개념인 방송운용·편성 정책을 담당하는 단순 심의 기구로서의 역할에 국한되어 있는 바, 방송개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방송위원회의 직무를 제안하고 있다.

설립되는 방송위원회는 방송기본계획의 수립 등 방송정책권과 허가추천 등 실질적인 인·허가권 및 방송발전자금 관리·운영등 방송총괄기구로서의 직무와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다만, 방송위원회가 방송기본계획 수립시 방송영상진흥과 관련하여서는 문화관광부와, 방송기술과 시설에 관련하여서는 정보통신부와 협의하도록 한다.

또한, 방송위원회는 규칙의 제·개정 등 준입법권을 행사하고 심의결과에 대

한 제재조치 등의 강화를 위하여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12)

이에 반하여 여당의 방송법안은 방송위원회의 주된 직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방송위원회는 문화관광부 및 정보통신부 장관과 협의하여 방송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방송 관련법 제·개정시 위원장이 정부 요원으로서 국무회의에 출석·발언하거나 국무총리에게 의안을 건의할 수 있다. ②방송 프로그램의 운용·편성 정책을 관장하며 ③방송사업자를 허가추천하거나 승인·등록하거나13) ④방송매체별 방송국간의 공정경쟁을 확립하고14) ⑤방송 발전기금을 관리·운용한다. ⑥방송내용에 관하여 심의 및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⑦방송광고공사의 일부 기능을 방송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한다.15)

12) 방송개혁위원회 공청회 자료집, 1999.2.22.

그의 방송법인과 관련한 권한은 다음과 같다.

- KBS(한국방송공사)
 - 사장 임명 제청
 - 감사 선임
 - 이사 총 11인 중 비상임이사 6인 선임
- MBC(방송문화진흥회)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총 9인 전원의 선임
- EBS(교육방송)
 - 위원회의 동의로 사장임명
 - 이사 총 9인 중 비상임이사 5인 선임
 - 예산 및 결산 승인
- 13) · 공중파 방송사업자의 허가·취소 및 재허가
 -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PP)의 허가·취소 및 재허가
 - 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 유료위성 방송, 멀티미디어 서비스 등)의 허가·취소 및 재허가
 - 중계유선방송 사업자의 허가·취소 및 재허가
- 14) · 수신료 및 방송요금 결정(요금규제)
 - 인·허가시 방송발전기금 조성
 - 내용규제(심의)
- 15) · 방송광고 심의
 - 방송광고 영업(기존 방송사로 이관)
 - 방송광고요금의 효율적 책정
 - 방송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방송위원회의 세부직무와 기능〉

여 당 안	한나라당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방송 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운용, 편성에 관한 사항 -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 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의 추천, 승인,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사항 - 위원회 규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 - 방송에 관한 연구, 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 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상호간의 공동사업이나 분쟁의 조정 - 방송프로그램 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 시청자 불만처리 및 청원에 관한 사항 - 방송발전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용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수신료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방송(광고방송 포함)의 운용, 편성정책에 관한 사항 - 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에 대한 추천, 승인·재승인 및 승인취소에 관한 사항 - 방송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사항 - 방송위원회 규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 - 방송에 관한 연구, 조사 및 방송인 연수 - 방송사업자 상호간의 공동사업 - 방송 프로그램 유통거래 및 분쟁조정 - 시청자 불만처리 및 청원에 관한 사항 -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방송수신료 및 시청료율에 관한 사항 -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 공영방송의 역할에 대한 감시 및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 - 방송 프로그램 심의 - 위원회에서 제제한 방송사나 프로그램에 대한 광고의 제한

* 규칙제정권(Rule Making) 확보 : 방송행정상의 필요한 조치에 대해 잠정 규칙을 제정할 수 있음.

* 준사법권 확보 : 방송국 종사자의 위법사항에 대해 벌금, 벌칙을 잠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음.

2. 방송사업자 개념 및 사업권 허가절차

2-1. 방송의 개념

새로운 정보 통신기술과 뉴미디어의 발달로 방송과 통신의 개념구분이 어려워지고 있다. 즉 방송위성과 통신위성의 결합,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의 겸영과 이를 전제로 하는 각국의 정보고속도로 사업의 추진은 음성·데이터·영상을 포함하는 서비스의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대체로 특정인 對 특정인(point to point)의 개념은 통신으로, 특정인 對 불특정 다수(point to multi-point)의 개념은 방송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음성은 물론, 데이터와 영상까지 전송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인 '정보고속도로'(Information Superhighway)의 개념은 방송과 통신의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

현행법상 규정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등에 관한 보도, 논평 및 여론과 교양, 음악, 오락, 연예 등을 공중에게 전파함을 목적으로 방송국이 행하는 무선통신의 송신"(법 제2조 제1호)이라는 방송의 개념은 방송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새롭게 정의되어야 할 것인 바, 이하에서는 방송 및 이에 관련된 각각의 개념들을 국민회의와 자민련 공동의 여당안과 한나라당의 방송법개정안에서 제시된 개념을 대비하여 도표화 하였다.

〈방송의 개념 및 분류〉

구 분	여 당 안	한나라당안
방송의 개념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	방송프로그램을 기획·제작 또는 편성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전송하는 것
지상파방송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여 행하는 다채널방송	유선전기통신설비(부분적으로 마이크로웨이브시설 등을 포함한다)를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

III. 주요 쟁점

위성방송	인공위성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	인공위성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
유사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계유선방송 : 지상파 또는 이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성방송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을 수신하여 중계송신(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녹화를 포함한다)하는 것 - 음악유선방송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판매·배포되는 음반에 수록된 음악을 송신하는 것 - 전광판방송 :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전광판에 보도를 포함하는 방송프로그램을 표출하는 것 	중계유선·컴퓨터통신망·전화선·전광판 및 기타 유·무선설비를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방송사업의 분류〉

구 분	여 당 안	한나라당안
지상파방송사업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사업	전파법에 의한 방송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국(종합유선방송을 행하기 위한 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을 관리·운영하며 종합유선방송을 행하는 사업	유선방송국을 관리·운영하며 종합유선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사업
위성방송사업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위성방송을 행하는 사업	인공위성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위성방송을 행하는 사업
방송채널사용사업(국) 채널방송사업(한)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	좌 동

방송전송망 사업		방송프로그램을 시청자에게 전송하기 위한 유·무선 방송전송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사업
유사방송사업		유사방송을 행하는 사업으로서 이 법 또는 관련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된 사업

2-2. 사업권 허가절차

여당안과 한나라당안은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및 중계유선방송에 대하여 동일하게 사업권 허가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즉, 방송위원회의 추천후 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타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무선국을 관리 운영하며 행하는 방송사업 ▲외국 인공위성 무선국의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방송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의 지구국 및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방송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정보통신부와 협의후 방송위원회 승인을 얻도록 한다. 이때 방송위원회의 추천, 허가, 승인 및 등록요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자구분 및 허가절차〉

구 분	여 당 안	한나라당안
지상파방송 사업자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방송국 허가를 받은 자	좌 동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위하여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 및 시설기준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	좌 동
위성방송 사업자	위성방송사업을 위하여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방송국 허가를 받은 자	좌 동

Ⅲ. 주요 쟁점

<p>방송채널 사용사업자(국) 채널방송 사업자(한)</p>	<p>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방 송위원회에 등록한 자. 다만,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 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 사용사업을 하는 자는 방송위원 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p>	<p>- 채널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문 화관광부와 협의의 거쳐 방송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 - 위성방송사업자가 채널방송사업 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널 방송사업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p>
<p>방송전송망 사업자</p>		<p>방송전송망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법 에 의하여 방송위원회에 등록을 한 후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p>
<p>유사방송 사업자</p>	<p>- 중계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을 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의 추천 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 및 시설기준에 의하여 정보통신 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 -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 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위원 회에 등록한 자 - 전광판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 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에 등록한 자</p>	<p>중계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 을 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의 추천 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 및 시설기준에 의하여 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p>

3. 방송사업자의 소유제한

3-1. 외국자본의 소유제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공영방송 체제를 유지했던 유럽제국에서는 당초 신문·방송·전기통신사업자간의 겸영이 배제되었으나, 뉴미디어 체제가 진입하면서 ①신문과 방송의 융합 전개 ②방송과 통신의 융합 ③외국사업자의 진출이 단계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공중파 방송, 지역방송, 지역민방, 케이블TV가 IMF한파 이후로 불황에 직면하고 있는 시기에 다채널디지털 위성방송이 도입됨으로써, 국내 방송시장에 채널공급과잉 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아시아 지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다채널 위성방송이 케이블 TV 산업을 진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외국사업자의 진출은 ①지역민방, 케이블TV 산업의 활성화 ②신문사, 대기업의 위성방송 진입 허용 ③방송과 통신의 융합 등 국내 사업자의 구조조정의 실현 상황과 연계하여 방송위원회의 주관하에 단계적이고, 유연한 접근방식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정보통신부는 케이블TV사업보다 훨씬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위성방송 사업에 대기업과 외국자본의 진출을 금지하는 것은 무리라며 국내 위성방송 사업의 정착을 위해선 소유지분 제한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문화관광부 역시 규제완화의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경련은 위성방송사업자를 위성방송전송망 사업자와 위성방송플랫폼 사업자로 구분하고 기업의 지분을 1백% 허용해 주고 국내 자본과 외국자본의 합작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언론 관련단체들이 대기업과 외국자본의 위성방송 사업진출에 대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아직까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여당측은 방송법 개정안을 통하여 케이블 TV와 위성방송사업에 대기업이나 외국자본 진출의 길을 상당부분 열어놓았다.

한나라당은 대기업과 외국자본의 진출과 관련하여 "현재 한나라당 방송법 시안은 위성방송 사업에 대기업과 외국자본이 각각 30%까지 지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향후 업계가 희망한다면 대기업에 한해 49%선까지 지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외국자본의 방송사업 소유제한〉

구 분	여 당 안	한나라당안
지상파방송	참여금지	참여금지
종합유선 방송사업	33% 참여	30% 참여
위성방송사업	33% 참여	30% 참여
방송채널 사용사업(국) 채널방송사업(한)	○참여금지 :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33%참여: 채널사용사업(종합편성, 보도채널 제외)	○참여금지 :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30%참여: 채널사용사업(종합편성, 보도채널 제외)
전송망사업	.	33%
유사방송사업	.	참여금지

* 33%의 근거는 WTO 통신협상의 기간통신망사업자 진입범위임.

3-2. 대기업 및 언론사의 소유제한

변화하는 방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업자구도의 설정과 공정 경쟁질서의 구축을 위하여 방송위원회는 방송사업의 진입, 방송사업의 내용, 방송요금 등을 규제하되, 방송사업자의 수, 진입범위는 유연한 접근방법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바, 단계적·제한적으로 대기업 및 언론사의 방송사업 진입을 허용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세가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1) 참여 전면 허용 입장

대기업의 방송참여를 불허하는 것은 경제 전반에 일어나고 있는 시장 경제 체제로의 전환에 적합하지 않고, 이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언론사에 뉴스, 정보채널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에도 맞지 않는 바, 전면적인 참여를 허용하되, 다만, 반독점 규제방안을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¹⁶⁾

(2) 제한적 참여 허용 입장

대기업 및 언론사는 보도 채널, 종합편성채널 등을 제외한 채널의 방송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¹⁷⁾

(3) 참여 불허 입장

대기업의 영상산업 독점 및 신문과 방송의 교차 소유로 인한 언론의 다양성 훼손과 획일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기업 및 언론사의 방송사업 참여는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이는 재벌개혁의 정부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것으로 재벌을 다시 육성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참여를 허용해서는 안된다.¹⁸⁾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상

16) 강현두, "새 방송통신법 조속한 제정", 여의도 클럽, 1998.2.12; 조재구, "새정부의 방송정책과 방송관계법 개정방향", 새정치국민회의 1998.2.20; 서정우, "루퍼트머독과 새로운 방송환경", 여의도클럽, 1998.2.26; 박명진, 한국일보칼럼, 1998.2.18.

17) 정윤식, "새정부의 방송정책과 방송관계법 개정방향", 새정치국민회의 1998.2.20; 최창섭 교수, 한국방송비평회 주최 「방송구조정립을 위한 대토론회」 발제, 1998.3.13.

18) 김학천, 「새정부의 방송정책과 방송관계법 개정방향」, 새정치 국민회의 공청회 자료집, 1998.2.20.

호 경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법안 8조 4항·5항)

〈대기업 및 언론사의 방송사업 소유제한〉

구 분	여 당 안	한나라당안
지상파방송		참여금지
종합유선 방송사업	33% 참여	30% 참여
위성방송사업	33% 참여	30% 참여
방송채널사용 사업(국) 채널방송사업(한)	○참여금지 : 종합편성 또는 보도 전문편성 방송사업	○참여금지 :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 문편성 방송사업

4. 방송발전기금(공익자금)

현재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공익자금관리위원회가 지상파방송의 광고방송수탁수수료를 재원으로 하여 방송진흥사업, 문화·예술진흥사업·방송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관련단체에 대한 운영경비 지원을 그 용도로 방송발전기금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그 동안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시장경제원리에 위배되게 일률적인 요금체계를 적용해 왔으며, 공익자금을 통해 방송을 좌지우지 해왔다. 이에 방송사는 방송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러한 공익자금을 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하고 그 관리를 방송위원회에 이관시키며¹⁹⁾,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순수하게 광고판매만을 대행하도록 한다.

4-1. 방송발전기금의 용도

방송발전기금이 방송사와 광고대행사의 수익금 중 일부로 조성된다는 점에서 지원대상을 방송과 광고분야로 한정하자는 주장²⁰⁾과 방송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문화·예술분야 등에 투자를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²¹⁾이 있다.

19) 방송위원회가 다른 국가예산의 사용없이 방송발전기금만으로 운영될 때 진정한 독립 규제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효성 교수, 「언론개혁과 방송법 개정」 방송개혁국민회의, 1998.2.18; 방송개혁국민회의·언노련·방송위노조 등 9개 단체, 「방송법 개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1998.2.28; 최창섭 교수, 「방송구조정립을 위한 대토론회」 한국방송비평회, 1998.3.13.

20) · 방송발전 지원(시청자단체·교육방송·장애인방송·남북방송 교류지원 등 포함)
· 광고발전 지원

4-2. 자금조성비율

자금 사용 용도의 타당성과 상황 변화 등을 감안하여 공익자금요율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과 조성자금규모를 우선 정하고 이에 따른 조성자금요율을 결정하는 방안이 있다.

이하는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의 방송발전기금의 조성 및 용도와 관련한 방송법 개정안을 대비한 것이다.

〈방송발전기금의 조성 및 용도〉

구 분	여 당 안	한나라당안
명 칭	방송발전기금	방송발전자금
재 원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매출액의 7% 이내 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연 매출액의 7% 이내	지상파방송의 광고방송수탁수수료
용 도	- 교육방송 및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지원 - 공공의 목적을 위한 방송사업자의 설립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 방송 프로그램 및 영상물 제작 지원 -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 지원 - 미디어교육 및 시청자단체의 활동 지원 - 방송광고 발전을 위한 단체 및 사업 지원 - 방송기술 연구 및 개발 - 문화, 예술 진흥사업 - 언론공익사업	- 방송 프로그램, 비디오 제작 등 영상진흥사업 지원 - 한국교원방송 기타 공공방송 지원 - 시청자지원사업 - 방송연구, 조사 및 연수사업 지원
기금관리 및 운용	기금은 방송위가 관리·운용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설치·운용	방송위가 조성·운용 '방송발전자금관리위원회' 설치·운용

- 21) · 방송발전 지원
- 광고발전 지원
 - 문화·예술지원
 - 시청자 관련 지원
 - 기타 방송의 공공성 제고와 방송발전에 필요하다고 방송위가 의결한 사업으로 하고 각 부문별 세부용도는 방송위원회 규칙으로 규정

5. 방송편성권의 독립

편성은 방송내용의 형성행위로 개념화 될 수 있는 바, 편성행위란 뉴스, 기사 보도, 사진, 그림, 화면, 비디오정보, 오락 등을 수집, 조달, 종합, 가공하고 분류, 선택, 배열, 변경하며 프로그램으로 형태 부여하는 포괄적·정신적·창조적인 작업이다. 방송내용 산출의 핵심행위인 이 편성권이 왜 독립되어야 하고, 필요한지는 국민의 보고 듣고 알 기본권리를 충족시키는 방송의 존재목적 자체이기 때문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현행 방송법 제1조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제3조는 '방송편성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종합유선방송법 제23조는 "방송편성은 누구도 규제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편성 현실에서는 그 독립성과 자율성이 억압되고 훼손되어 온 바, 방송사 편성·보도·제작 등 편집행위주체자들의 국민적 위임사항인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 신장하여야 한다"는 의무에 충실하기 위하여는 편성권의 법적인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방송법에 방송의 제작·편성권을 사업자·경영진과 제작·편집·편성 종사자 간의 공유되는 권리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양자간에 구체적인 제작, 편성에 관한 규약의 제정을 의무화하여 제작, 편성이 어느 일방에 의해 전달되는 것을 막고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도 동시에 기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방송의 사업자나 경영진과 종사자 간에 제작, 편성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방송위원회에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²²⁾

6. 공영성 강화 방안²³⁾

무제한적 매체 증설과 시장 경쟁이 필연적으로 방송의 공익성을 침해하지만, 시장을 무조건적으로 통제하려 한다거나 상업 방송을 폐지하고 순전한 공영 방송 체제로 방송을 개혁하자는 것은 시대적 흐름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공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22) 이효성, 「언론개혁과 방송법 개정」, 방송개혁국민회의, 1998.2.18.

23) 김승수, 「공영성강화」, 한국방송인총연합회, 1998.7.22; 방송개혁위원회, 「방송개혁의 방향과 과제」 제1차 공청회 자료집, 1999.1.26.

6-1. KBS의 공공성 확보 방안

한국방송공사(KBS)법을 방송법내에 흡수하여 국가기간방송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한다.

KBS로 대표되는 공영 방송에는 광고를 폐지하는 대신 수신료 징수 개선과 국고 보조를 통해 재정을 확충하도록 한다. 만일 지금 당장 광고를 폐지한다면 수신료가 엄청난 폭으로 오르게 될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대두될 수도 있으나 이는 그동안 KBS가 공영 방송이면서도 국가보조를 전혀 받지 못하고 상업 방송과 똑같은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을 간과한 데서 나온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 방송 산업은 소득세법에 오락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세금뿐만 아니라 전기 요금에서도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데 이는 KBS의 공영성 강화를 전제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KBS가 국제방송 기능인 국제방송과 사회교육 방송에도 매년 수백억원의 지출을 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KBS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인다면 KBS를 시청료와 국고 보조를 통해 운영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반면 상업 방송에 대해서는 규제를 대폭 해제하고 그 대신 방송 수익의 일부를 환원하여 공공 서비스 방송에 지원토록 함으로써 상업 방송도 공익성에 기여하도록 할 수 있다. 현재는 한국 방송 광고 공사가 각 방송사 광고 수익의 6%를 공익자금으로 환수하여 문화 및 언론 관련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광고 경쟁을 제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여 상업 방송의 광고 수익률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초과 수익 환수제를 통해 소수 계층의 방송 재원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현재 KBS의 24개 지역 방송국을 행정 및 생활권을 고려하여 5~7개의 방송권으로 나누어 효율적으로 재정비하고, 권역별 방송 편성은 그 지역의 필요에 따라 방송시간의 일정부분을 독립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각 권역별 책임자는 인사·예산집행·경영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되, 경영 실적에 따라 보수 체계도 차별화 한다.

6-2. MBC의 위상 정립방안

공익성을 중심으로 하는 공영채널의 성격을 유지하되 다른 방송사와의 편성 협의를 통하여 차별성을 유지한다. '방송문화진흥법'을 개정하여 MBC에 대한 방송문화진흥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한다.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과 관련하여 이사회는 방송위원회에서 선임하는 9인의 이사로 구성하되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고, 이사회의 MBC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한다. MBC 사장은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의 추천을 거친 후 선임한다.

MBC의 지방계열사는 지역의 문화·생활·행정권 등을 고려하여, 지방계열사의 수를 적정수로 통폐합하고 지역별 민간방송형태로 환원(5~6개의 광역방송권 구성)시키되,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송운영철학이 있고 그에 상응하는 재정적 능력을 가진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가맹사 형태로 지역MBC를 운영하도록 한다. 수익발생시 일정비용을 방송발전기금으로 적립하는 장치를 제도적으로 구비하도록 한다.

6-3. EBS의 위상 정립방안

교육방송의 공익적인 채널성격에 맞추어 직업교육, 학교교육의 보완, 평생교육, 통일교육, 과학교육, 산업교육, 인성교육에 중점을 둔다.

EBS를 독립공사화 하고, 방송발전기금에서 운영재원을 조달하도록 한다.

EBS사장은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이사회는 총 9인으로 구성하되 사장이 지명하는 상임이사 3인과 방송위원회가 선임하는 비상임이사 5인으로 구성하되, 비상임이사 5인중에는 교육부장관이 추천한 1인, 전국 교직원단체가 추천한 1인이 포함되도록 한다.

예산 및 결산의 승인은 방송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그 이외 이사회 기능은 EBS특성에 맞게 조정한다.

6-4. 지역민방

지역민방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MBC와 SBS의 가맹사 체제로 전환하도록 하고, 복수 네트워크 가입을 허용하여 일본 민방이 실시하고 있는 '크로스국'

또는 '믹싱국'처럼 2개 이상의 네트워크 프로그램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현재 지역민방의 방송권역을 생활권·행정권을 감안하여 광역화 하고, MBC 가맹사, 지역민방, 케이블 회사간의 M&A를 추진하되, M&A의 크기와 지역의 범위는 방송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다양한 자본의 유입을 위하여 지역 공공기관, 타지역 자본도 지배주주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입가능성을 검토한다.

6-5. 공공채널의 구조 개혁

현재 효율성의 측면에서 통합운영이 요구되는 공공적 성격의 채널로는 KBS 라디오 국제방송과 사회교육방송, 케이블TV인 아리랑TV, K-TV, 리빙채널, 한국스포츠TV, YTN 등이 있다. 이들 공공 채널의 통합기본원칙은 공공의 부담은 줄이고 효율성은 높이는데 있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서 볼 때 민간부문이 맡아 수익성이 있는 채널은 민간 부문에 매각하고, 비록 수익성은 없지만 보완채널로 꼭 필요한 채널은 구조조정을 통하여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채널의 구조조정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시설 및 장비,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비용의 절감을 들 수 있다. KBS라디오 국제방송과 사회교육방송을 아리랑TV와 통합시켜 해외홍보방송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KBS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라디오 매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아리랑TV와 통합하여 해외 위성TV로 연계된 종합홍보방송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V와 라디오를 묶어 종합적인 프로그램 편성을 한다면 해외홍보방송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공공채원으로 운영되는 K-TV, 리빙TV, 아리랑TV는 비효율적 운영(K-TV는 국고로, 아리랑TV는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출연한 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1년 예산이 약 150억원에 상당하고, 리빙TV는 1997년까지 누적적자가 271억원으로 재정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으로 공공의 부담을 증대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통합하여 새로운 성격의 홍보방송을 수행할 때 운영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수익성이 있는 한국 스포츠TV는 민간부문에 매각하고, 매각을 통한 수익금은 공공성채널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한다. YTN은 3년 연속적자(1,000억원에 육박)로 향후 운영여부가 불투명한 상

태이지만 YTN의 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방송을 중단하기보다는 재원이 안정된 KBS 또는 MBC의 공영방송에 통합하거나 민간부문에서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현행 공영방송 및 지역민방의 정상화를 위한 방송개혁위원회의 개혁안은 다음과 같다.

〈공영방송 및 지역민방의 정상화〉

쟁점사항		방송개혁위원회개혁안('99)	현 행
공 영 방 송 정 상화	KBS	1, 2채널 편성 차별화 2001년 2TV광고폐지, 수신료 조정	1, 2TV 비차별적
	MBC	단계적 민영화 추진 방송문화진흥회 감독 강화 총매출액 7% 공적기여금 환수 지방계열사 적정수로 통폐합	민영적 공영채널 방송문화진흥회 감독 미약
	EBS	독립공사화	교육부 산하 특별법인
지역민방 정상화	현행 허가 방송권역 준수 특정사 프로 50% 이상 편성 금지 단계적 권역 확대	SBS, 인천방송 사실상 전국 송출 대부분 SBS 프로	

7. 케이블TV와 중계유선방송

7-1. 케이블TV

케이블TV는 종합유선방송국(SO) 관련 사항과 프로그램공급자(PP) 관련 사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종합유선방송국의 채널선택권(편성권)을 확보하고, 채널 Tiering제를 도입한다. 종교·정부 홍보채널을 운영하는 자의 재정적 능력에 따라 외부의 지원없이 독자적으로 운영토록 유도하고, 케이블TV망을 통한 시내전화 및 부가통신 서비스를 허용한다.

둘째로, 복수의 PP(MPP)의 규모와 범위는 시장규모·가입자수·시장점유율을 감안하여 방송위원회가 조정한다. 현행 전문편성·부편성의 비율을 조

정·완화하고, PP 등록제 도입과 PP 장르 조정을 허용한다.

7-2. 케이블TV와 중계유선방송의 교차소유 및 경영제한 방안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을 통합방송법의 단일 법체제로 통합하고, 단일 부처 또는 단일 규제기구에서 관장한다.

구조규제(Structural Regulation)에 있어서 진입규제·경영규제·소유권 규제 등을 완화한다.

첫째, 수평적 경영(Cross-ownership)을 허용하여 사업자(SO)가 복수의 SO를 소유하는 시스템(MSO : Multiple System Operator)을 허용하고, 사업자(PP)가 복수의 PP를 소유하는 시스템(MPP : Multiple Program Provider)을 허용한다. MSO와 MPP의 크기와 범위는 방송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둘째, 수직적 경영(SO-PP-NO)을 허용하여 종합유선방송국(SO)과 프로그램사업자(PP)의 전송망사업(NO) 경영을 허용한다. 전송망 사업의 지배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통신과 한국전력의 SO, PP 경영은 당분간 제한한다. 지배적 사업자의 SO, PP 경영여부는 방송위원회가 SO, PP, NO간 공정경쟁원칙을 적용하여 추후 결정한다.

〈법·제도상의 규정〉

구 분	현 행 법	여 당 안	한나라당안
매체간	- 지상파방송과 케이블 TV(SO)간 상호 경영 금지	- 지상파방송사업자·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간 상호 경영 금지 - 전송망사업자의 지상파방송 경영 금지	- 지상파방송사업자·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간 상호 경영 금지
매체내	- SO·NO·PP간 대통령령 범위내 경영 허용 - 대통령령 범위내 MSO, MPP 허용	- SO·NO·PP간 상호경영허용(단, NO의 SO, PP 경영 금지) - MSO, MPP 및 SO·PP간 경영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규정	- SO·NO·PP간 상호경영허용(단, NO의 SO, PP 경영 금지) - MSO, SO·PP 경영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규정

7-3. 케이블TV와 중계유선방송의 통합

통합방송법의 제정논의와 더불어 케이블TV는 사업 시작이래 결정적인 전기를 맞고 있으며 그 가운데에 SO(System Operator:종합유선방송국)와 중계유선방송(난시청지역에 KBS, MBC, SBS의 공중파방송만을 재전송하는 중계유선방송)의 통합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중계유선사업자 때문에 사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1차 SO들은 중계유선사업자들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었다. 중계유선사업자 역시 최근의 사업적 성장을 바탕으로 SO를 백안시 하는 분위기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1차 SO들의 사업환경을 충분히 검토하고 시장에 진입한 상당수의 2차 SO들이 사업 준비단계에서부터 중계유선을 매입하거나 협업 관계를 전제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고, 그 결과 중계유선사업을 하다가 SO로 진입하게 되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결정적으로 케이블TV사업의 한 축인 PP(Program Provider : 프로그램공급업자)의 관심이 중계유선사업자로 옮겨 가면서 시장 내에서 중계유선방송은 케이블TV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과제가 되고 만 것이다.

이에 대비되는 중계유선업계의 변화도 더욱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중계유선사업자들의 변화의 양상은 크게 SO 전환 준비 사업자군, 협업 참여 사업자군, 시장 퇴출 사업자군 등으로 대별된다. 첫 번째의 경우는 지금까지 케이블TV업계에 회자되던 몇몇 거대 사업자들을 비롯해 그간 SO와의 경쟁에서 자신감을 얻은 사업자들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들 사업자를 중심으로 망과 송출센터의 통합을 위한 준비의 진행과 동시에 전송망 업그레이드도 추진중에 있다. 또 하나의 사업자군은 이미 SO와의 협업을 실현하거나 협업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업자들이다. 이들은 향후 강력한 경쟁이 가져올 부담과 불투명한 미래를 SO와의 협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극복하고자 하는 경우들이다. 2차 SO 지역을 중심으로 이러한 협업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세번째의 경우는 이미 이러한 변화속에서 탈락하게 되거나 탈락한 사업자군이다. 현재까지는 SO에 의해 매입된 사업자들이 가장 많지만 같은 중계유선사업자들에 의해 통합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그밖에 다른 유형으로 중계유선사업자에게 사업을 넘긴 SO도 나타나고 있어 이후 케이블TV시장의 무한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케이블TV사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SO의 자체 전송·선로의 설치 및 중계유선방송과 전송·선로시설 상호이용의 허용 등을 통해 M&A를 유도한다. 양 매체의 M&A 유도는 공정경쟁질서와 당사자 계약, 시장원리로 적용하여 방송위원회가 조정한다.

7-4. 위성방송과의 관계

(1) 사업자 구도

위성방송 사업체를 어떻게 구성하는가의 문제는 향후 국내 위성방송의 특성과 기본운영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다. 위성방송 사업자의 자격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주요 쟁점은 대기업, 언론사의 참여와 교차소유 허용 문제이다. 가용채널이 극히 제한되었던 지상파 방송시대의 소유규제 규정을 다채널 다매체 환경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이다. 특히 방송사업자와 신문사 등 언론사업자가 이중매체를 교차소유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금지해 온 기존의 법률조항은 개정이 필요하다.

대기업의 참여문제는 위성방송의 도입과 운용에 소요될 막대한 인력과 재원을 효과적으로 충당하고, 나아가 방송소프트웨어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점을 업계와 정부 양측이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것 같다.

향후 매체 소유 규제 정책은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케이블 TV, 신문사간에 배타적 관계를 전제로 이중매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매체간 교차소유 및 매체 내 복수소유를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함으로써 매체 시장의 경쟁과 탄력적 운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시장의 독점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일사업자의 동종 및 이중매체의 소유한도를 정하거나 지역시장 혹은 전국시장 내에서의 시장점유율의 최고한도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²⁴⁾

우리나라의 경우 케이블 프로그램 공급업체가 위성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케이블 프로그램 공급업체의 사업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소극적인 방법으로, 케이블 프로그램 공급업자의 서비스 제공 범위를 위성방송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즉 위성방송사업자가 케이블 프로그램 공급업체로

24) 방송구조개혁위원회, 「방송구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1998.9.

부터 일정 시간대의 프로그램 편성물을 패키지 단위로 구매하여 편성시간대를 채우는 방식이 된다.

둘째, 케이블 TV와 동일 편성물의 직접위성방송서비스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보다 적극적인 방안으로서, 케이블 프로그램 공급업체가 방송위성이나 통신위성의 채널을 임차하여 완전한 방송사업자로서 개별 수신가구를 대상으로 직접위성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이 방안은 프로그램 공급업자가 직접위성채널을 운영하면서 직접수신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케이블 프로그램 공급업자가 일반 수신가구를 대상으로 직접위성방송 사업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공급면허와는 별도로 방송사업자 면허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케이블 프로그램 공급업자가 직접위성방송 서비스를 하게 될 경우, 케이블 시스템 운영자가 해당지역에서 가지는 독점적 사업권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공급업자와 케이블시스템 운영자 사이에는 배타적 계약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케이블 프로그램 공급업자와 케이블 시스템 운영업자 간의 계약관계를 수정하고, 케이블 시스템 운영업자의 사업지역내에서 경쟁적인 프로그램 서비스를 허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국내 케이블 TV 사업의 기본구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케이블 프로그램 공급업자가 별도 편성한 직접위성방송 서비스를 허용하는 방안이 있다. 즉 케이블 프로그램 공급업자가 케이블 시스템 운영자에게 공급하는 프로그램 편성과는 다른 체제를 갖추고 위성방송사업에 진출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일단 프로그램 공급업자와 케이블 시스템 운영자 사이에 체결되는 동일 프로그램 편성물에 대한 배타적 계약관계를 위배하지 않고 별도의 방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 케이블 프로그램 공급업자가 케이블 시스템에게 공급하는 프로그램 편성과, 개별 수신가구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직접위성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나의 해결책은 케이블 시스템에 공급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직접위성방송으로 방영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비슷한 시점에 양자가 동일한 프로그램을 두고 경쟁함으로써 발생하는 케이블 시스템

운영자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가 될 것이다.

(2) 위성방송과 케이블 TV 수신체계의 연계

위성방송의 수신체계에 대한 주된 논쟁의 하나는 케이블 TV와 공동수신안테나를 통한 위성방송 재전송의 허용 여부이다. 현재 매체간의 연계에 대한 논쟁은 매체 차별화를 주장하는 측과, 매체간 상호연계를 추구하는 측으로 대별되어지고 있다. 위성방송과 케이블 TV 혹은 위성방송과 공동수신안테나간의 연계는 결국 위성방송과 케이블 TV를 경쟁적 매체로 볼 것인가 아니면 보완적 매체로 볼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다.

만약 상호연계를 허용한다면, 위성방송의 입장에서 볼 때 직접수신가구층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시청자들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 반대로 서로 상이한 전송경로를 공유하게 됨으로써 매체간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 역시 존재한다. 이로인해 이제 막 도입단계에 접어든 케이블 TV와 위성방송의 균형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공동수신안테나를 통해 위성전송을 하는 것은 현실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국내 위성방송에 대한 공동수신안테나 수신을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미 국내 위성방송 수신가구의 상당수가 공동수신안테나방식으로 외국 위성방송을 수신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률적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외국위성방송은 규제하지 않으면서, 국내 위성방송을 규제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난시청 지역의 수신가정이 양질의 화면과 채널의 다양성을 누리기 위해서 저렴한 공시청 위성방송이나 케이블 TV 양자중에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케이블 TV 방송국이 운영되지 않는 지역에서만 위성방송의 공시청안테나를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케이블 TV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편의적 발상으로서 법적 당위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케이블 TV방송국이 매년 확대되면, 기존 위성수신용 공시청시설을 철거해야 하는 불합리성과 비경제성이 제기될 것이다.

만약 케이블 프로그램 공급업자가 위성을 이용하여 지역 케이블 시스템에게 전송한 신호를 공동수신안테나가 수신하면, 공동수신안테나와 케이블 TV간에 경쟁적 관계가 형성된다. 이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두 가지 대안이 가능하다.

하나는 케이블 TV 사업이 허가된 지역에 대해서는 케이블용 프로그램을 재전송하는 공동수신안테나를 불허하는 방안이다. 물론 케이블 사업이 허가되지 않은 지역은 규제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신규 케이블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기존의 공동수신안테나 사업자의 처리도 정책적인 과제로 남아있다. 케이블 TV 사업자에게 우선권을 줄 수도 있지만, 기존 사업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법률적 형평성을 잃게 되는 것이다. 또한 케이블 TV가 공동수신안테나에 대해 우위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 역시 현재로서는 약하다.

일정 규모 이하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동수신안테나 사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1994년 방송법개정안에서는 50가구로 제한하였다. 공동수신안테나를 허용하는 가입자의 범위는 케이블 TV 사업과 경쟁을 할 수 없는 규모를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상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제로 남아있다.

(3) 위성방송과 케이블TV의 연계방안

공동수신안테나에 이어 다음으로 제기되는 정책적 과제는 위성방송과 케이블 TV의 연계방안으로, 논점은 위성방송채널을 케이블 TV를 통해 재전송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이다. 외국의 위성방송이나 케이블 TV사업의 성공사례가 말해 주듯이, 위성방송과 케이블 TV의 상호연계는 필요하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위성방송과 케이블 TV가 상호 보완관계로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장기적으로 양자간의 경쟁관계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초기에 양 매체의 연계는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할 것이다.

첫째는 프로그램 내용 측면에서, 각기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지향하는 위성방송과 케이블 TV가 연계될 경우 수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전문적 프로그램의 종류와 수가 보다 다양해질 것이다.

둘째, 위성방송과 케이블 TV가 전송채널을 공유할 경우, 각 매체는 보다 많은 수용자를 확보할 수 있다. 즉 위성방송과 케이블 TV 모두가 상대 매체가 보유하고 있는 수용자 시장을 동시에 공유할 수 있으므로 전체 가시청자권을 확장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용 측면에서, 수용자는 어느 한 매체의 수신장비만으로도 양쪽의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위매체당 비용규모가 현저히 감소

하게 되는 것이다.

8. 위성방송

8-1. 위성방송의 개념

위성방송(SB:Satellite Broadcasting)이란 적도상공 약 3만6천km의 궤도에 쏘아올린 방송위성(BS:Broadcasting Satellite)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방송 등의 각종방송을 하는 것을 말한다.

위성방송은 일반공중에 의해 방송이 직접 수신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인공 위성에 탑재된 우주국에 의해 신호를 전송 또는 재송신하는 방송방식이며 방송 위성은 수신측이 개별수신이나 공동수신이나에 따라 고출력형과 중출력형으로 대별된다.

위성방송의 장점으로서는 ①위성으로부터 직접 전파를 송신하기 때문에 화질이 좋고 화상이 깨끗하다. ②적도상공에서 한반도를 향해 전파를 송신하기 때문에 제주도나 울릉도까지도 포함하는 전국방송이 가능하며 난시청지역에도 깨끗한 영상을 제공할 수 있다. ③PCM(Pulse Code Modulation:펄스부호변조)장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고음질의 방송이 가능하다. ④위성을 중계매체로하여 방송을 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자연 또는 전쟁 등의 재해를 입지 않고 긴급시에도 전국에 일제히 방송할 수 있다는 것 등을 꼽을 수 있다.

(1) 위성방송 개관

위성방송이란 적도상공 3만6,786km지점에 위치한 정지궤도 위성을 이용한 방송을 말한다. 이러한 위성방송은 기존 지상파 방송에 비해 방송의 광대역성과 초고주파사용으로 인한 고품질이라는 두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방송전파 전송방식에 따라 위성방송은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아날로그방식의 위성방송은 지상방송방식 또는 부분적으로 개조된 아날로그 TV신호를 주파수변조하여 송신하는 방송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달에 힘입어 최근 점차확산되고 있는 디지털 위성방송은 아날로그 위성방송의 장점이 곧 단점으로 작용하는 반면에 아날로그 방송에 비해 월등히 많은 채널 수를 확보할 수 있고 기능 및 방송의 품질면에서도

우수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 방식을 이용해 위성방송을 실시할 경우 위성중계기의 능력을 단순히 기존의 TV서비스에만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지화방송, 팩스방송, 데이터방송 등에 융통성 있게 할당할 수 있으며, 종합디지털방송(ISDB: Integrated Services Digital Broadcasting)망의 구축과 차세대방송기술을 확보하는 데에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 또 공중파 TV처럼 산이나 구릉 등에 막혀 있는 곳의 난시청지역도 일시에 해소된다. 태풍 등 천재에 의한 지상통신망 장애시 긴급복구 통신망 구성은 물론 행정통신이나 지상통신망 연결이 어려운 도서 산간지역 통신용으로도 이용되어 국가위기 관리능력도 크게 향상된다.

(2) 직접위성방송(DBS)의 법규적 개념

현행법상 엄격하게 위성방송을 정의한다면 새로운 전송수단을 매개로 시청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직접 송출하는 직접위성방송(DBS: Direct Broadcasting Satellite)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케이블TV의 프로그램 공급업자가 통신위성을 이용하여 직접 시청자에게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유료위성채널방송(Communication Satellite TV), 또한 케이블TV의 프로그램 공급업자가 통신위성을 이용 SO(System Operator)를 경유하여 케이블TV 가입자에게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SCN(Space Cable Network)은 모두 현행법상 방송의 영역이 아니라 통신의 영역에 속하게 되기 때문이다.

직접위성방송을 시청자, 즉 일반가정에서의 직접수신을 기준으로 개념 정의하는 것도 통신위성과의 차별성을 염두에 두고 시작한 것이었으나 오늘날 이미 시청자들이 통신위성과 방송위성의 구별없이 1m 미만의 파라볼라 안테나를 통해서 위성을 통한 전파의 수신이 가능하게 되고, 제도적으로도 허용되면서 이러한 엄격한 구별은 무의미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Space Cable Network는 케이블TV의 프로그램공급업자가 주된 사업자가 됨으로써 케이블TV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제외하더라도 직접위성방송의 개념을 고출력 방송위성을 통한 프로그램의 개별적이고도 직접적 수신을 의미하는 좁은 의미의 DBS는 물론이고, 개인이 자신들의 안테나를 통해 통신위성을 경유한 프로그램의 직접수신, 또한 케이블TV가입자에게 위성방송 전용 프로그램뿐 아니라 지상파방송, 케이블TV의 프로그램까지도 수신할 수 있게 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한국의 무궁화위성은 디지털전송방식에 의한 DBS를 실현할 수 있는 첨단인 통신 방송위성이다. 세계적으로 도입기에 있는 디지털방송은 아직 국제표준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통신부분(ITU-R)이 디지털 방송에 대한 스튜디오규격과 전송규격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동영상의 디지털압축부호화에 대해서는 방송분야외에 통신, 컴퓨터 등의 분야에서도 향후 영상과 통신간 결합의 진전을 위해 동화상전문가그룹(MPEG)과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연계해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8-2. 위성방송사업자 구도 문제

동남아시아는 위성방송의 전쟁이라 할 만큼 위성방송의 새로운 개척지로서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위성수는 총 169 개로서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등이 선점하고 있고 국제통신은 물론 비디오통신, 위성방송 등의 다양한 형태의 위성방송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위성방송의 본격 도입을 위한 법규는 미비하다. 이로 인하여 이미 발사되었거나 발사될 예정인 위성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을 경우 연간 손실액은 18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한국통신과 데이콤을 중심으로 하여 위성방송의 조기도입이 주장되고 있다.

변화하는 방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업자구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대기업, 언론사, 외국자본의 방송사업 진입을 단계적·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방송위원회는 방송사업의 진입규제, 내용규제, 요금규제 및 공정 경쟁질서를 구축하고, 위성방송사업자의 수, 진입범위는 유연한 접근방법을 채택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8-3. 위성방송사업자관련 문제

(1) 개념정의의 문제

위성방송은 전송망사업(네트워크 보유자), 플랫폼사업(방송채널사업자 관리 및 프로그램, 마케팅 업무), 채널사용사업자(프로그램 공급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위성방송 사업자의 개념 정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책쟁점이 예상되는 바,

우선 여당안에서 처럼 전송망사업자가 위성방송사업자와 같은 개념일 경우에는 한국통신과 데이콤이 위성방송사업자가 되며 대기업과 언론사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만 100% 주식과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이때 가입자관리 및 편성 및 마케팅 업무의 주체가 불분명하게 된다. 대기업과 언론사가 플랫폼사업을 수행한다면 등록요건의 충족시 자유롭게 위성방송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전송망사업과 플랫폼사업자를 합한 것이 위성방송사업자의 개념이 될 경우에는 한국통신과 데이콤이 위성방송사업자가 되며 대기업과 언론사는 프로그램 공급업만 담당하고, 한국통신과 데이콤이 가입자관리 및 마케팅업무도 담당한다.

한나라당에서는 플랫폼 사업자를 위성방송운용사업자로 보는 바, 허가심사절차를 거쳐 대기업과 언론사가 위성방송운용사업자로서 편성 및 마케팅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이때 소유지분은 30%로 제한된다.

향후 공중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사업자간, 또는 방송사업자와 채널사용사업자간 신문과 방송의 경영문제는 전체 미디어시장 및 방송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중심으로 방송위원회가 진입규제의 범위와 크기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허가절차

위성방송은 이하에서와 같이 다수의 방식으로 허가되어 질 수 있다.²⁵⁾

① 일본(JBS)의 허가방식

과거 우리나라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시에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조정에 의해 사업자 및 그 주주가 구성된 경험이 있다. 일본의 위성방송 JSB 허가시에도 우정성은 경단연(경제인단체연합회)에 일임하여 다수의 주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의 방송사업자를 선정한 바 있다. 이 방식은 경합신청자들의 자율적인 조정에 의해 사업자가 선정된다는 점에서 정치적 특혜시비를 원초적으로 불식할 수 있는 방법이다.

② 입찰, 경매제 방식

외국에서 전기통신사업 부문에 있어 입찰, 경매제는 이미 익숙한 사업자 허가방식이다. 미국의 PCS사업도 입찰, 경매제를 통해 사업자가 선정되었다. 방

25) 방송구조개혁위원회, 「방송구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1998.9.

송부문에서는 영국이 '1990년 방송법'에 따라 90년대 초반에 사업자 선정시에 입찰, 경매제를 채택한 바 있다.

③ 개척자 우선의 원칙

제한된 일부 채널을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이든, 다수의 채널을 일시에 수용하는 방안이든 위성방송의 도입에 따른 정치, 사회적 영향력과 산업적 효과, 그리고 기존 미디어질서에 대한 파급효과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심사 또는 허가기준을 미리 제시하고 통과, 합격된 자에게 위성방송 허가권을 부여하는 '개척자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④ Grand Consortium방식

이 방법은 다수의 방송사업자가 한 개의 컨소시엄을 형성하고 다수의 채널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이다. 1사업자 1채널 방식은 초기의 위성 방송(소수 채널이며 주로 아날로그 방식)도입 때 선진국에서 주로 이용했던 허가방식이라고 한다면 디지털 혁명이 몰고 온 다채널 시대에는 1컨소시엄이 다수의 채널을 운용하는 방식이 선호되고 있는 추세이다.

(3) 외국사업자의 국내방송시장 진입문제

외국사업자의 국내방송시장 진입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방송시장 진입절차상의 문제이다. 국민적 동의나 규제기구의 허가절차 없이 그 진입이 내정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국내 신문사, 대기업의 진입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외국사업과의 진출이 결정되었다는 점이다. 전후 공영방송 체제를 유지했던 유럽제국에서는 당초 신문·방송·전기통신사업자 사이에서는 겸영이 배제되었으나, 뉴미디어 체제가 진입하면서 신문과 방송의 융합이 전개된 후, 방송과 통신의 융합, 외국사업자의 진출의 단계가 검토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루퍼트 머독의 국내 위성방송사업진입은 방송정책상 그 순서가 역순으로 전개되고 있는 셈이다.

셋째, 국내 공중파 방송, 지역방송, 지역민방, 케이블 TV가 IMF 한파로 불황에 직면하고 있는 시기에 다채널디지털 위성방송이 도입됨으로써, 국내방송시장에 채널공급과잉 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아시아 지역의 사례에서 보듯 바와 같이 다채널 위성방송이 케이블 TV 산업을 진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케이블업계에서는 공존의 논리보다는 케이블TV 공멸의 우려의 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요컨대 외국사업자의 진출은 ①지역민방, 케이블TV 산업의 활성화 ②신문사, 대기업을 위성방송 진입 허용 ③방송과 통신의 융합 등 국내 사업자의 구조조정의 실현 상황과 연계하여 방송위원회의 주관하에 단계적이고, '유연한 접근방식'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

(4) 해외위성방송·국제TV위성방송 중계송신

향후, 외국위성방송의 국내중계를 허용한다면, 이 경우 외국위성방송을 국내 PP로 사업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과 SO, 중계유선이 외국위성사업자와 개별 계약을 맺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현단계에서는 국내 종합유선방송 PP육성, 위성사업의 활성화 등을 고려할 때 종합·중계유선방송을 통한 국내수신은 규제되어야 한다. 해외위성방송·국제 TV위성방송의 케이블 중계송신은 국내 방송시장 잠식효과가 지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방송규제기관이 국내 방송시장의 성숙도와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개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내외 여건상 방송법상 규제가 어렵다면 기술기준(케이블 TV, 중계유선 허용 채널수, 주파수)으로 규제가 가능할 것이다.

9. 방송심의제도

9-1. 현행 심의제도의 주요 문제점

방송 심의가 그동안의 과정에서 누적돼 온 문제점을 다음 여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²⁶⁾

첫째, 방송 심의가 정부의 직·간접적 통제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일부 방송 내용(드라마나 외국영화, 광고)에 대한 검열적 사전심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방송의 질 향상과 품위 유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대부분의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보도 프로그램의 편파나 왜곡에 대해서는 거의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방송 심의가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차원에 한정됨으

26) 미디어운동본부 2차 포럼, 「미디어포럼21」, 1998.

로써 그 결과가 방송국의 재허가에 반영될 여지가 없다는 점이다. 다섯째, 심의 제재조치가 프로듀서나 기자와 같은 실무자에 국한됨으로써, 심의제도가 방송 경영자나 관리자에 대한 효과적 규제 수단으로 작용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여섯째, 심의기준의 불명확성과 포괄성으로 인해 심의 제재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다른 한편으로 다매체, 다채널의 진전에 따라 이러한 기존 심의제도는 운용상의 한계를 드러내게 된다. 예컨대 현재 우리나라의 방송심의 제도는 위원회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방송에 정치 논리 개입을 배제하고 합의제 심의과정을 통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합의제로 심의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다채널 상황에서 합의제 심의는 그 형식상 실효성을 갖기 어렵게 된다. 하지만 다채널·다미디어 상황이 된다고 해서 방송이 수용자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케이블TV의 내용심의와 관련된 문제로는 다음 네가지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정보의 상업화 경향이 강해짐에 따라 외설·폭력 프로그램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늘어난 공공망을 통해 무의미한 오락물이 과다하게 유통되고 공공관심사가 무시됨으로써 공동체 의식이 이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프로그램제작자(PP)와 방송사업자(SO)가 분리됨에 따라 방송내용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넷째, 채널이 늘어나고 쌍방향성이 진전될수록 수용자 입장에서는 정보의 진실성을 파악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IMF 사태이후 사업자들의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재방송 비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간접광고 등에 대한 규제완화 압력이 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끝으로, 법의 사각지대에서 사실상 종합유선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있는 중계유선방송을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9-2. 방송 심의제도의 개편방향

(1) 심의제도의 개선과제

다채널화의 진전에 따른 방송심의와 관련하여 다음 몇가지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방송 내용의 폭이 넓어지는 만치 저질의 프로그램이 범람할 가능성이 커진다. 둘째, 방송 사업 참여의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방송 경험이 없는 사람이 책임자가 될 경우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책임감이 희박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셋째, 제공되는 정보량이 비약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를 적절하게 선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수용자의 능력이 필요해 진다는 점이다. 각급 공공기관에 의한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넷째, 방송 프로그램이 세분화 전문화 됨으로써 기존의 지상파 방송의 사회 통합적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서 향후 우리 나라 방송 심의제도의 개선 방향은 대략 다음 여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① 고비용·저효율의 타율심의의 개선

우선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공 규제기관 중심의 타율적 심의였다는 점이다. 방송심의를 정부가 앞장서서 타율적으로 방송국에 책임을 강요하는 방식은 방송사업자 스스로가 방송에 부여된 책임의식을 자각할 기회가 상실되어 사회적 책임의식이 정착하기 어렵다. 반면에 방송사업자를 중심의 다수주의적 공익성, 즉 많은 시청자가 원하는 것을 서비스해야 한다는 식의 자유시장 경쟁논리로 무장되어 무조건적인 자율심의만을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한계를 갖게 마련이다. 이 양자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 방송규제정책의 일차적 과제다.

② 긍정·부정 요소가 조화된 구체적 심의 기준 마련

다음으로는 방송 심의의 기준이 모호한데다가 부정적 기준 중심이었다는 점이다. 기준의 내용은 대체로 도덕적 당위성을 강제하는 사항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또한 현행 방송심의 기준은 대개 어떤 것을 금지하는 부정적 기준(negative standard)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양질의 프로그램 제작을 장려하는 데는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심의기준 제정에서 개별적 심의에 이르기까지 수용자 단체와 방송 현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만 실효성 있는 기준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③ 다양하고 영향력 있는 제재 방안 모색

규제주체인 방송위원회 권한이 애매한 관계로 단발성 관계자 징계의 악순환

에 빠져있다는 점이다. 이는 방송심의가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심의 결과에 따른 제재 조치는 크게 보아 방송사나 관계자에 대한 제재, 운영규제(허가 기간 축소 혹은 재허가시 반영), 경제제재(광고 규제 혹은 벌금 부과)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방송사나 관계자에 대한 제재에 머무르고 있다는 데 근본적 문제가 있다. 향후에는 방송사나 채널에 대한 종합평가제를 도입하여 이를 재허가의 근거로 삼을 필요가 있다. 또한 방송사업자가 시청률을 올려 광고수입을 늘리겠다는 유인을 없애기 위해 평가점수가 낮은 프로그램이나 채널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여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④ 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미국, 영국, 프랑스 등도 청소년 보호시간대를 설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지상파 방송의 경우 저질프로그램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방송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청소년에게 부적당한 프로그램은 오전 5시30분부터 오후 9시 사이에 방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유료방송에 대해서는 완화). 프랑스의 경우 선정적이거나 폭력을 선동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30분 사이에는 방송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⑤ 미디어별 차별화 문제

다미디어·다채널 시대, 미디어 융합 시대의 방송 내용 심의와 관련하여 논의되어야 할 사항으로 미디어별로 심의를 차별화 하는 문제다. 지상파 방송, 케이블TV, 위성방송, 주문형방송, 전광판방송, 인터넷방송 등으로 방송 관련 미디어가 확대되고 있는 데, 이들을 통해 방송되는 내용에 대한 심의 기준은 동일성과 차별성이 동시에 유지될 필요가 있다. 동일해야 한다는 것은 다미디어 시대가 된다고 해도 수용자가 방송을 시청하는 상황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과 관계가 있다. 즉 수용자는 지상파방송이나 유선 혹은 위성방송이나에 무관하게 동일한 수상기를 통해 방송을 접하게 되기 때문에 내용 규제의 근본 논리가 달라지지 않는다. 반면에 차별성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각 방송이 근거하고 있는 자원이 다르고 접근비용, 사회적 영향력 등이 상이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파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되는 지상파방송과 소수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방송하는 주문형 방송을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⑥ 수용자의 심의 참여 활성화

끝으로 공공기관 중심으로 심의가 진행됨으로써 일반 수용자의 방송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방송 규제정책, 심의기준 설정, 심의제재의 결정, 방송사 운영감시와 같은 영역에서 다차원적으로 수용자의 요구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방송 심의제도 개편방향

다채널 다미디어 시대가 진전될수록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는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으며, 수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이였다. 타율적 공공심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용자 복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등급제와 평가제에 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된 바 있다.

① 등급제 논의

방송프로그램 등급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을 최소화한다는 면에서 심의 업무를 가급적이면 방송사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고, 수용자가 방송 내용에 대하여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여러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 부문 중심으로 진행돼 온 방송 심의를 시민사회와 방송사로 이관하고 규제기구는 이에 대한 평가와 감독 중심으로 업무를 분장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방송이 되기 전에 프로그램 내용을 심의하고 등급을 결정해야 한다는 면에서 사전 심의의 성격을 띠게 되지만, 그 심의 주체가 방송사라는 점에서 자율규제의 한 방법이기도 하다. 상술하자면 방송위원회와 같은 공공 규제기관에서는 시청자 보호를 위한 각종 법규나 지침을 만들고 각 방송사에서는 방송될 프로그램을 자체의 심의기구를 통해 심사하여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수용자들은 화면에 일정한 크기로 표시되는 등급 표시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의 시청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연방통신법에 텔레비전수상기에 V-칩 장착을 의무화함으로써 등급제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시도하고 있다. 시청자가 텔레비전 수상기에 내장된 V-칩에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프로그램의 등급 허용 범위를 입력하여 특정 등급의 프로그램을 볼 수 없게 할 수 있는 것이다.

프로그램 등급제는 이렇듯 내용심의가 갖는 위헌 시비를 없애고 방송 규제주체와 방송사, 그리고 수용자가 역할을 분담하여 유해하거나 반사회적인 프로그

램을 방송에서 추방하고자하는 내용 규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등급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등급 판정 기준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 방송사에서는 등급 지침을 성실히 준수해야 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미디어 교육과 관련되는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시청자의 미디어 내용에 대한 이해 증진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② 평가제 논의

방송평가제는 방송 심의와 관련하여 기존의 장면 삭제나 부분적 문제제기 중심의 심의제도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방송평가는 프로그램에 대한 준수법적 심의가 아니라, 방송활동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장기적 추세에 대한 누적적 심의일 필요가 있다. 방송평가에는 방송 내용의 분석과 경향 파악, 방송사업의 생산성과 시장효율성 평가, 다양한 채널운용의 사회문화적 효과, 시청자의 반응과 여론의 향배, 방송산업의 자원동원능력 등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야 하며, 미시적 분석과 거시적 분석을 통괄하는 방송 전반에 대한 통합적 시각이 견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송평가는 기본적으로 방송사 재허가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방송제도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자료로서 제도 개편이 필요한 경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먼저 방송평가의 기본원칙으로 다음 여섯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규제 목적의 소극적 평가가 아니라 바람직한 방송문화 형성과 방송이념 구현을 위한 적극적 평가다. 둘째, 방송의 산업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을 모두 반영할 수 있는 평가를 지향한다. 셋째, 평가의 객관적 기준을 확보하여 자의성을 배제한다. 넷째, 방송현업인, 수용자, 전문가의 견해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방송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을 추구한다. 여섯째, 방송평가가 실제 프로그램 제작과 방송사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방송평가의 포괄적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 공익성, 윤리성이라는 상위가치에 연결될 수 있는 기본요소 분석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둘째, 방송프로그램의 내용, 편성, 방송이념 구현 등에 필요한 인적, 물적 요소, 방송의 사회공헌도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지향한다. 셋째, 방송현업인, 방송전문가, 시청자 모두에게 방송평가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한다.

끝으로 이러한 방송평가제가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 평가 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차별화 한다. 우수 방송 사업자에게는 세제상의 혜택이나 기금 지원, 표창 등을 고려하는 것이다. 둘째, 방송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 여론화 한다. 셋째, 평가 결과 일정 점수 이하의 사업자에게는 등록취소, 허가취소 등을 검토한다. 혹은 일정기간 영업 정지 시키거나 과징금을 부과한다. 넷째, 평가 결과가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개선을 명령한다.

(3) 등급제·평가제의 정착 방향

이러한 등급제와 평가제가 새로운 방송심의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방송 규제기관, 방송사, 수용자 단체, 개별 수용자 모두가 역할을 분담한다는 자세로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와 같은 프로그램 심의 규제 기구에서는 등급화와 평가를 위한 지침과 기준을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만들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미디어, 다채널 시대에 수용자들이 능동적으로 미디어를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미디어 교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방송사나 방송사업자는 스스로 제작하거나 편성하는 방송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등급 부여나 각 평가 요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프로그램 제작 관행이 정착될 수 있으며 나아가 건전한 방송문화가 뿌리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각 수용자 단체는 보다 체계적으로 방송 내용을 모니터하여 등급 부여가 적정한지, 방송평가가 정당한지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모니터 결과 지침과 기준에 어긋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각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용자 개인들은 방송을 통해 제시되는 등급정보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10. 시청자주권

현대 언론의 구조적 역학관계는 정부, 언론(언론인, 언론사업자), 시민(시청자)의 조화로운 균형관계로 형성되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언론에 대해 막대한 권한을 행사했고, 경쟁력 제고라는 명분하에 언론의 상업성과 독점이 방치된 동시에 시청자의 주권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법리적으로 시청자는 방송주권자, 정보상품소비자, 방송 운영 주체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방송정책과 방송 내용이 결정되고 분배 전달되는 과정에서 거의 어떤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것이다.

그동안 정치논리와 산업논리에 밀려 주권을 찾지 못했던 시청자들에게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아주는 것이야말로 방송개혁의 시급한 현안이다.

10-1. 시청자 권익보호

여당의 법개정안 제3조는 “시청자는 방송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항의 신설은 평가할 만하나 이 조항의 정신을 살린 실질적인 조항이 부재하다. 이 조항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시청자가 방송위원회나 방송사 이사회 등에 시청자 대표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10-2. 시청자위원회

(1) 구성방식

방송사의 노사합의과정과 추천을 통해 방송위원장을 최종 위촉하고, 선임과정 전반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이는 추천단체로부터의 추천을 전제로 하되 추천단체가 복수인 점과 정치적 성향의 차이가 큰 우리 현실을 감안하여 노사합의라는 공개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시청자 대표성이 명실공히 확보되고, 소수계층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각 부문별로 고른 분포를 보일 수 있도록 하고, 시청자단체의 참여가 명문화되어야 한다.

(2) 권한과 직무

여당의 방송법안은 종래의 자문기구에서 나아가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방송사의 정책과 방송운영 전반에 참여하고 심의하는 역할은 불충분하다. 편성정책 및 경영 전반에 대해서도 심의하고 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청자의 프로그램 방송정지청구가 있을 경우 방송위원회가 이를 심사, 결정하도록 한다. 이 경우 시청자의 자격요건 및 정지청구 요건을 별도로 규정한다.

10-3. 참여 및 반론권

공영방송의 총 방송시간 중 일정시간을 시청자참여 프로그램에 할당하도록 한다. 이때 각 부문별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접근을 허용한다. 케이블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가할 때 접근 채널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접근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관점과 시각을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접근의 기회를 보다 많은 시청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음부즈맨 프로그램의 제작시 시청자단체들의 의사를 수렴하여, 형식적이고 자사홍보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음부즈맨 프로그램을 시청자단체와 건전한 시민의 견해대로 제작하여야 한다. 반론보도청구권에 동일한 시간을 이용하게 하고, 정책공표에 대한 반론권을 시민사회단체에도 보장하도록 한다. 즉 여론형성에 중요한 단체가 방송을 통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다.

10-4. 국민주방송

기존 방송의 취약점인 '시청자 주권 확립'을 실현시키는 가장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방안이 국민주방송 설립이다. 국민주방송의 목표와 임무는 공익적 기반 위에서 시청자 주권 반영, 정치 권력과 자본의 외압으로부터 벗어나 공영정신의 구현, 민주적 의견 형성 및 공정한 사회감시 실천이다. 최소한의 안정적 경영을 위하여 주식회사 형태로 출발하지만 방송환경의 변화에 따라 특별법에 의한 발전을 모색할 수 있으며 주식회사 기간에도 과소비 조장, 비교육적인 광고, 불공정성을 유도하는 지나친 상업주의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경영방식은 제한된 개인소유 주식으로의 집중을 피하고, 방송의 이념과 경영방법을 유지시킬 수 있는 단체의 경영참여를 보장한다. 편성은 의견, 여론, 정보전달 및 감시기능이 발휘되는 특성을 지니도록 한다. 국민주 방송은 국민의 동의와 동참 정도에 따라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10-5. 기 타

시청자평가 프로그램의 주당 60분 이상 의무편성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편성 시간대이다. 주요 시청시간대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음부즈맨 프로그램과 접근 프로그램의 혼합으로 발전되도록 한다. 일상

심의기능을 폐지할 경우 종합심사기능의 현실적 행사문제를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방송영화 방영기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프로그램 등급제는 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방송위원회 직무안에 '프로그램 등급구분' 조항을 삽입하고 구체적인 등급구분 대상, 종류방법 등에 관하여는 시행령에서 정한다. 주시간대의 오락편성비율, 광고시간 규제원칙, 드라마 편성량에 관한 할 정한다. 당원칙이 법규적 차원에서 정비되면 이것들이 프로그램 제작자에게는 제작지침이 되고 심의기관에게는 통제규범이 될 수 있어야 한다.

11. 뉴미디어와 디지털방송

11-1. 방송환경의 변화

유선과 위성 뿐만 아니라 LMD(Local Multipoint Distribution Service), MMDS(Multichannel Multipoint Distribution Service)등 새로운 전송수단이 등장하고 디지털 기술에 의해 방송의 다매체, 다채널화가 진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매체간, 채널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WTO체제의 출범으로 방송시장의 개방이 가속화되고, 국제위성방송에 의한 방송의 무국경화로 방송시장의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디지털위성방송이 등장하면서 지상파방송, 유선방송, 위성방송 네트워크 사이에 경쟁이 본격화되고, 여기서 지상파방송사업자, 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통신사업자, 소프트웨어 사업자간의 M&A가 본격화 되고 있는 것이다.

11-2. 뉴미디어 정책

한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디지털 기술,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으로 방송과 통신의 영역이 구분되지 않는 융합현상이 진전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기존의 매체구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함으로써 방송의 개념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것으로 보인다.

첫째, 기존의 뉴미디어정책은 방송하드웨어중심에서 방송제작과 유통중심으

로 전환되어야 한다. 즉, 뉴미디어정책은 기존의 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에서의 하드웨어중심의 산업적인 논의와 함께 뉴미디어의 네트워크나 서비스규정에서의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시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둘째, 뉴미디어정책은 디지털 다매체·다채널하에서 방송영상물의 육성차원을 넘어서서 영상물과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및 육성의 방향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즉, 새로운 미디어기술의 다원적인 서비스기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방송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셋째, 뉴미디어간의 상호연계방안은 경쟁 보다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설정하여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 예컨대, 뉴미디어의 정책담당자는 주파수할당, 방송인허가 등의 측면에서 디지털 위성방송간,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간에 보다 상호조정적인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뉴미디어 전반을 조화롭게 조정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정책기구의 단일화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넷째, 뉴미디어정책은 공공의 이익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종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예컨대, 디지털 지상파방송에 있어서 공영방송은 공익성의 유지·강화를 위한 운영재원의 마련이 중요하고, 민영방송은 공익성을 유지하면서 프로그램 제작인프라를 강화하는 방안의 마련이 중요하다. 그리고 종합유선방송에 있어서는 방송영상물의 주요한 유통시장으로서 양질의 프로그램 확보, 지역매체적 특성의 최대한 활용, 멀티미디어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개발·육성을 위한 방안의 마련이 중요하고, 위성방송에 있어서는 다채널이라는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방송영상물의 제작·유통산업의 발전을 유인하는 정책과 이를 통한 국내의 문화정체성 보호 및 대외적인 영상시장의 개척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안의 마련이 중요하다.

※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중 방송관련 사항

다채널화시대 개막 및 디지털TV 방송 시행	
필요성	<p>국내위성방송 허가지연으로 위성방송사업 활성화 차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등 외국위성방송의 국내침투 급증 - 방송프로그램 관련 영상S/W, 송수신기 등 관련 산업육성 차질 - 무궁화위성 방송채널 미활용(16개)에 따른 손실발생(연 76.8억원) <p>국내 방송산업 발전기반 구축을 위해 TV방송의 디지털화 추진</p>
추진계획	<p>위성방송허가 및 다채널화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방송법 조기 제정으로 국내 위성방송을 허가하여 서비스 개시 - 위성방송 관련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수신기 시장, 방송프로그램 관련 영상S/W 시장 등) <p>디지털TV 방송의 실시로 방송산업발전 여건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나로그TV에서 디지털TV 방송으로의 전환계획 수립·확정 - 디지털TV 방송 실시를 위한 기술기준 및 표준화작업 추진 - 디지털TV 방송 기술개발, 시험방송 및 본방송 실시
세계화시대에 부응한 선진방송체계 구축	
필요성	<p>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지상파방송,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방송매체 간 균형발전 여건을 조성, 우리 방송의 선진화 이룩</p>
추진계획	<p>선진방송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성방송 실시 근거 마련 등 통합방송법 조기제정 - 통합 「방송위원회」 신설, 권한 강화 - 방송사별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 시청자 주권 강화 <p>공영방송의 공익성·공공성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영방송사의 이사 및 사장 선임 방식 개선 - 경영감독기구의 공적책임 보장장치 강구 - KBS 등 공영방송의 구조 조정을 통한 경영혁신 추진 - 지역민방 방송권역 확대 등 경영기반 확충 <p>케이블TV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규제 및 외국인 투자 제한 완화 - 채널묶음별 차등가격제 도입 등 수신료제도 전환 - 전송망을 이용한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p>관광·산업단지, 지역특성이 강한 지역을 대상으로 소출력 지역FM 라디오방송 신설 확대</p> <p>방송광고제도 개선 및 공익성제고 방안 검토</p>

IV. 결 론

이상의 방송법 개정과 관련한 쟁점사안에 있어서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은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독립성, 다양성, 차별성, 개방성, 효율성, 규제 완화 등의 합리적 원칙하에 방송구조개혁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방송은 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방송의 경영과 편성은 방송기관의 독자적이고, 합리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다매체·다채널 시대의 방송은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공급하여, 시청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

셋째, 편성의 다양성을 위해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은 각각 프로그램 편성의 방향을 제도적으로 차별화하여 시청자는 전체적으로 균형된 방송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은 소유나 재정 등 구조적 측면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적 기능에서도 분명한 차이를 보여야 한다.

넷째, 방송 장비의 공유와 방송인력의 자유로운 흐름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 체계를 개방적 경쟁체제로 전환한다.

다섯째, 전체 방송구조 차원에서 중복 투자나 낭비적 요소를 줄이고 개별 방송사는 효율성을 높여서, 국제적 경제력을 강화하고 방송에 대한 국민의 직·간접적 재정 부담을 줄인다.

여섯째, 방송매체의 공적규제 원칙은 준수하되, 방송사업의 진입·내용·행정규제를 완화하여 방송산업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정보와 문화가 국가경쟁력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이게 될 21세기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방송이 차지하는 문화·산업적 의미는 그 어느 때보다 증대될 것이다. 이 같은 세기 전환적 시점에서 방송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음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여러해 계속되어온 방송법 개정논쟁은 이제 합리적인 법률 개정으로 조속히 매듭지워져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현행방송법과 여당개정안의 대비표

현행 방송법	여당안(99.7)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p>제1조 (목적)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공적기능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적 여론형성과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1·12·1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송"이라 함은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교양·음악·오락·연예등을 공중에게 전파함을 목적으로 방송국이 행하는 무선통신의 송신을 말한다. 2. "특수방송"이라 함은 종교방송, 교육방송, 교통·기상방송, 대외방송 등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허가받은 방송국이 행하는 무선통신의 송신을 말한다. 3. "방송국"이라 함은 전파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방송(특수방송을 포함한다)을 행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4. "방송법인"이라 함은 방송국을 경영하는 법인을 말한다. 5. "방송순서"라 함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배열을 말한다. 6. "광고방송"이라 함은 광고를 목적으로 행하는 유상의 방송을 말한다. 7. "편성책임자"라 함은 방송국의 장이 선임한 자로서 방송순서의 편성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지상파방송: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 나.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여 행하는 다채널방송 다. 위성방송: 인공위성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 2. "방송사업"이라 함은 방송을 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지상파방송사업: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제1호 가목의 방송을 행하는 사업 나. 종합유선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종합유선방송을 행하기 위한 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운영하며 제1호 나목의 방송을 행하는 사업

8. "광고책임자"라 함은 방송국의 장이 선임한 자로서 광고방송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다. 위성방송사업 :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무선국을 관리한다. 위성방송사업 :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제1호 다목의 방송을 행하는 사업

라. 방송채널사용사업 :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다. 위성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에 의하여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자

4. "중계유선방송"이라 함은 지상파방송 또는 이 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성방송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을 수신하여 중계송신(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녹화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5. "중계유선방송사업"이라 함은 중계유선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중계유선방송사업자"라 함은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음악유선방송"이라 함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판매·배포되는 음반에 수록된 음악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8. "음악유선방송사업"이라 함은 음악유선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음악유선방송사업자"라 함은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0. "전광판방송"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전광판에 보도를 포함하는 방송프로그램을 표출하는 것을 말한다.
11. "전광판방송사업"이라 함은 전광판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전광판방송사업자"라 함은 전광판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4항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3. "전송망사업"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종합유선방송국으로부터 시청자에게 전송하기 위하여 유·무선 전송·선로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14. "전송망사업자"라 함은 전송망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제9조제10항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5. "방송편성"이라 함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시각·배열 등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16. "방송분야"라 함은 보도·교양·오락 등으로 방송프로그램의 영역을 분류한 것을 말한다.
17.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18. "종합편성"이라 함은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방송분야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p>19. "전문편성"이라 함은 특정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p> <p>20. "유료방송"이라 함은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그 댓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p> <p>21. "방송광고"라 함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방송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포함한다)을 말한다.</p> <p>22. "협찬고지"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접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 등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p> <p>23. "방송편성책임자"라 함은 방송편성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p>
	<p>제3조(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방송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3조 (방송편성의 자유등) ①방송편성의 자유는 보장된다.</p> <p>②방송순서의 편성·제작이나 방송국의 운영에 관하여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p>	<p>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①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p> <p>②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p> <p>③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하며,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p>

	<p>④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p>
<p>제4조 (방송의 공적책임) ①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방송은 공익사항에 관하여 취재·보도·평론 기타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하여야 하며, 사회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함으로써 그 공적임무를 수행한다. ③방송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 ①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방송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방송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음란·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5조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①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② 방송은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사회정의의 전파,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③방송은 특정한 정당·집단·이익·신념 또는 사상을 지지 또는 옹호할 수 없다. 다만, 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허가받은 방송이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방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발전에 기여하여야 하며, 계층간·지역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90·8·1></p>	<p>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①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②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방송은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④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⑤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여야 한다.</p>

<p>⑤방송은 사회적으로 유익한 생활정보를 확산·보급하고,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을 높이며, 민족문화의 창조적 개발에 기여하여야 한다.<신설 90·8·1></p> <p>⑥방송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기여하여야 하며, 음란·퇴폐·폭력을 조장하는 내용이어서는 아니된다.<신설 90·8·1></p>	<p>⑥방송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p> <p>⑦방송은 사회교육기능을 신장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확산·보급하며,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p> <p>⑧방송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순화에 힘써야 한다.</p>
	<p>제7조(적용범위) 방송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2장 방송국의 경영과 방송법인</p>	<p>제2장 방송사업자들</p>
<p>제6조(방송국의 경영) ①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동일한 방송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그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0·8·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방송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방송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3. 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설립된 방송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그 계열기업 및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방송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신설 90·8·1></p> <p>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는 그 초과분 또는 소유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신설 90·8·1></p>	<p>제8조(소유제한등) ①방송사업자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하여야 한다.</p> <p>②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3. 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사업자에 출자하는 경우 <p>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과 그 계열기업(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간신문이나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p>

④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신설 90·8·1, 98·2·28〉

⑤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허가받은 방송법인이 아닌 자는 특수방송을 행할 수 없다.

⑥방송국의 장은 매년말 당해 방송법인의 재산상황을 공고하고 그 내용을 문화관광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89·12·30, 98·2·28〉

제7조 (방송법인의 경영금지) ①방송법인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또는 통신을 경영할 수 없다.

②방송법인의 이사(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중 그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총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개정 90·8·1〉

제7조의2 (자료제출) 방송국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6조 제1항·제2항 및 제7조의 사실확인에 필요한 관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2·28〉

[본조신설 90·8·1]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과 그 계열기업 또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일간신문이나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은 그와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총수의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⑤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상호 경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상호 경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⑥종합유선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전송망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상호 경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⑦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을 경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⑧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경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⑨정당(정당법에 의한 지구당을 포함한다)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⑩제5항 내지 제8항의 경영금지 및 소유제한 대상자에는 그의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p>⑪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p>
	<p>제9조(추천·허가·승인·등록등) ①지상파방송사업 또는 위성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 장관의 방송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②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 및 시설기준에 의하여 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방송위원회는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④제3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을 얻은 때부터 제2조제3호 나목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⑤방송채널사용사업·전광판방송사업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 사용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⑥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국내에서 수신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를 소유 또는 입차하여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방송위원회는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⑦제6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3호 다목의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p> <p>⑧외국 인공위성의 무선국(국내에서 수신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의 특정 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방송위원회는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⑨제8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3호 라목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p> <p>⑩전송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⑪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허가·승인 및 등록의 요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0조(심사기준·절차) ①방송위원회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추천, 동조제3항·제5항·제6항 및 제8항의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능력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4. 방송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p>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7.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p> <p>②방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할 때에는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공표하여야 한다.</p> <p>③방송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제11조(방송분야의 고시 등) 방송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채널의 다양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편성의 방송분야와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른 편성비율 등을 고시할 수 있다.</p>
	<p>제12조(지역사업권) ①방송위원회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허가 추천할 때에는 일정한 방송구역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권리(이하 "지역사업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승인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구역과 음악유선방송의 사업구역은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생활권 및 지리적 여건과 전기통신설비 등을 참작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방송위원회가 고시한다.</p> <p>③방송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매출액의 100분의 7의 범위 안에서 지역사업권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제8조 (외국자금의 유입금지) 방송법인은 외국인 또는 외국의 정부나 단체로부터 기부금·찬조금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산상의 출연을 받지 못한다. 다만, 외국의 교육·체육·종교·자선 기타 국제적 친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부터의 출연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89·12·30, 98·2·28〉</p>	<p>제14조(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①지상파 방송사업과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행하는 자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육·체육·종교·자선 기타 국제적 친선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의 단체로부터 재산상의 출연을 받을 수 있다. 가. 외국의 정부나 단체 나. 외국인 다.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②종합유선방송사업·위성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제외한다)을 행하는 자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제1항 각목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 ③전송망사업을 행하는 자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제1항 각목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p>
<p>제9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방송국의 장이나 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다.〈개정 90·8·1〉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3.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p>	<p>제13조(결격사유)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방송사업 또는 전송망사업을 할 수 없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승인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할 수 없다. 중계유선방송사업·음악유선방송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p>

4. 형법 제87조 내지 제90조·제92조 내지 제101조,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제9조 제2항·제11조 내지 제16조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5.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이나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집행중에 있는 자

1. 외국인 또는 외국의 정부나 단체
2.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9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제6항·제8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법인의 대표자 또는 방송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형법 제87조 내지 제90조, 제92조, 제101조,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 제9조제2항, 제11조 내지 제16조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이나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집행중에 있는 자

	<p>7.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전송망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p>
<p>제10조 (연수) ①방송국의 장은 방송종사자의 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제도를 설치·운영한다. ②방송국의 장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구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제15조(변경허가등) 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변경허가 추천,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는 제9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제6항·제8항 및 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법인의 합병 및 분할 2. 최다수 주식소유자 또는 최대액 지분소유자의 변경 3. 방송분야의 변경 4. 방송구역의 변경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 <p>②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대표자 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변경하거나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대표자를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방송위원회 및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p> <p>③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대표자 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변경하거나 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대표자를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방송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p>

	<p>제16조(허가유효기간)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7조(재허가) ①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허가유효기간의 만료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 장관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②방송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허가 추천을 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각호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송위원회의 방송평가 2. 제99조제1항에 의한 방송위원회의 시정명령의 회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3.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4.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5. 방송발전 지원계획 이행 여부 6. 허가 당시의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p>③제10조제2항·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재허가 추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
	<p>제18조(허가·승인의 취소등) 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방송위원회가 각각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은 방송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재허가를 받거나 승인·변경승인을 얻거나 등록·변경등록을 한 때2.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때3.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4.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은 때5.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방송 또는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할 경우로서 제13조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의 대표자 또는 방송편성책임자가 된 경우에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변경하는 때에는 취소할 수 없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승인 또는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9조(과징금 처분) ①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시청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중별과 과징금의 금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p> <p>④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을 이 법 제36조에 의해 설치된 방송발전기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p>
제3장 방송위원회	제3장 방송위원회
제11조 (설치)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방송내용 전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90·8·1>	제20조 (방송위원회의 설치)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고, 방송내용의 질적 향상 및 방송사업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 (구성등) ①위원회는 방송관계 전문가 및 학식·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90·8·1> ②위원회 위원중 3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한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자를 임명한다.<개정 90·8·1>	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통령은 위원회 위원을 임명함에 있어 3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한 자를 임명하고, 3인은 시청자 대표성을 고려하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2배수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③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2인의 상임위원을 두되, 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원중에서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2인의 상임위원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3조 (위원장등) ①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	제22조(위원장) ①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p>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p> <p>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90·8·1></p> <p>④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개정 90·8·1></p>	<p>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p> <p>④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p> <p>⑤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으로 보며, 예산기관이 위원회의 예산요구액을 감액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제14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부위원장·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p> <p>②위원이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제23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 및 위원들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②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③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p>
<p>제14조의2 (위원의 대우) 위원중 비상임인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당·여비 기타 실비를 받을 수 있다.</p> <p>[본조신설 90·8·1]</p>	<p>제24조(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①위원중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비상임인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②위원장·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p>
<p>제15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무원(교육공무원 및 법관자격이 있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2. 정당법에 의한 정당원 3. 방송국 또는 방송관련사업에 종사하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p>제25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교육공무원, 법관 및 이 법에 의하여 정무직공무원이 된 자는 제외한다)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3. 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음악유선방송사업·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전송망사업에 종사하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p>제16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임기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p> <p>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p>제26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임기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p> <p>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p>제17조(위원회의 직무)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p> <p><개정 89·12·30, 90·8·1, 98·2·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송의 운용·편성의 기본정책과 광고방송에 관한 사항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법인의 이사임명의 추천 3. 방송내용의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및 연수에 관한 사항 	<p>제27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는 다음 제1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경우 방송영상진흥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과, 방송기술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과 각각 협의하여야 하며 제7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송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방송국 및 방송종류 상호간의 관계, 공동사업 및 협조에 관한 사항
5. 방송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6. 시청자 불만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위원회의 규칙 제정 및 개폐
8.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 및 제재조치

②위원회는 방송국이 방송한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익사항에 관하여 공적책임을 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의·의결한다.〈개정 90·8·1〉

③위원회는 방송이 국민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게 하고 그 내용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송물에 대하여 방송되기 전에 그 방송여부를 심의·의결한다.

〈개정 90·8·1〉

1. 방송용 극영화와 만화영화(비디오물등을 포함한다)
2. 외국에서 수입한 방송순서(운동경기등의 중계 및 보도에 관한 방송순서를 제외한다)
3.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방송국에 위탁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광고물

④문화관광부장관과 방송국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90·8·1, 98·2·28〉

⑤위원회는 방송국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90·8·1〉

2.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운용·편성에 관한 사항
3.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의 추천, 승인,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사항
4. 위원회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5. 방송에 관한 연구·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상호간의 공동사업이나 분쟁의 조정
7. 방송프로그램 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8. 시청자불만처리 및 청원에 관한 사항
9. 방송발전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10.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11. 위원회의 예산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2. 기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위원회의 직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p>⑥위원회는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시전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0·8·1></p>	
<p>제18조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28조(위원회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되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회는 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p>
	<p>제29조(관여 금지) 위원회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p>
	<p>제30조(상임위원회) ①위원회는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장·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임사항과 상임위원회의 회의 및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p>
	<p>제31조(방송평가) 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③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며,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p>
	<p>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①방송위원회는 방송·중계유선방송·전광판방송의 내용과 기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송이 국민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고 그 내용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도록 방송광고에 대하여는 방송되기 전에 그 내용을 심의하여 방송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p>
<p>제19조 (심의위원회등) ①위원회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90·8·1〉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30인이내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며,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및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0·8·1〉 ③위원회는 위원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p>	<p>제34조 (심의위원회) ①위원회는 제33조에 규정한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며,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p>

제20조 (심의규정) ①위원회는 제17조 제2항 및 제3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회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규칙으로 제정·공표하여야 한다.〈개정 90·8·1〉

②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90·8·1〉

1. 보도·논평의 공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유민주주의의 신장과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3.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4. 민족문화의 창조적 계발에 관한 사항
5.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관한 사항
6. 가정생활의 순결에 관한 사항
7.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의 신장에 관한 사항
8.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9. 기타 이 법이 규정하는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

제33조(심의규정) ①위원회는 제32조에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회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규칙으로 제정·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
4.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관한 사항
5. 성차별과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
6. 국제적 우의 증진에 관한 사항
7. 민족문화의 창달과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8. 보도·논평의 공정성·공공성에 관한 사항
9.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
10. 제99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11. 기타 이 법에 규정된 위원회의 심의업무에 관한 사항

③방송사업자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음란성 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중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3항의 방송프로그램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분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규칙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류기준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p>제35조(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① 위원회는 방송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불만처리 및 청원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을 보조하기 위하여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p> <p>③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시청자불만처리의 절차와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p>
	<p>제36조(방송발전기금의 설치) 위원회는 방송진흥사업 및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위하여 방송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제37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액 2. 제12조제3항에 의한 지역사업권료 3. 방송사업자의 방송발전지원계획에 의한 출연금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징수액 5. 기타 수입금 <p>② 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광고 매출액의 100분의 7의 범위안에서 기금을 징수할 수 있다.</p> <p>③ 위원회는 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매출액의 100분의 7의 범위안에서 기금을 징수할 수 있다.</p> <p>④ 위원회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재원에 대하여는 방송사업자의 방송운용의 공공성과 수익성 등을 기준으로 방송사업자별로 그 징수율을 차등 책정할 수 있다.</p>

	<p>⑤위원회는 제2항에 의한 기금 징수를 한국방송광고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한국방송광고공사"라고 한다)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3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업에 사용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방송 및 기타 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 2. 공공의 목적을 위한 방송사업자의 설립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3. 방송프로그램 및 영상물 제작 지원 4.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5. 미디어 교육 및 시청자단체의 활동 6. 방송광고 발전을 위한 단체 및 사업 지원 7. 방송기술 연구 및 개발 8. 문화·예술진흥사업 9. 언론공익사업 10. 기타 방송의 공공성 제고와 방송발전에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사업
	<p>제39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위원회가 관리·운용한다.</p> <p>②위원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를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40조(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①위원회는 제36조의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p> <p>②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10인 이내로 위촉한다. 다만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인사가 10분의 3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p> <p>③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p>

<p>제21조 (시정 및 제재) ①위원회는 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시정 및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90·8·1></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시청자에 대한 사과2. 해당 방송내용의 정정·해명 또는 취소3. 해당 방송순서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또는 1년이내의 범위안에서의 출연 또는 연출의 정지 <p>②방송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명령 내용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결정사항 전문을 방송하고,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③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또는 제재를 명령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한 때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89·12·30, 98·2·28></p> <p>⑤삭제 <90·8·1></p>	
<p>제22조 (사무처) ①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p>	<p>제41조(위원회 사무처)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p>

<p>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③사무처의 조직·운영과 사무처 직원의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p>	<p>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p> <p>③사무처에는 실·국·부를 두고, 세부조직 및 운영과 사무처 직원의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p>
<p>제23조 (위원회의 규칙)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p>	<p>제42조(위원회규칙의 제정과 개정) 위원회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20일 이상 미리 예고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관보에 게재·공표하여야 한다.</p>
<p>제24조 (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4장 (제25조 내지 제29조) 삭제 (90·8·1)</p>	<p>제4장 한국방송공사</p>
	<p>제43조(설치등) ①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기간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이하 이 장에서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p> <p>②공사는 법인으로 한다.</p> <p>③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p> <p>④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방송국을 둘 수 있다.</p> <p>⑤공사의 자본금은 3천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p> <p>⑥제5항의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⑦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와 지역방송국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기타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⑨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p>
	<p>제44조(공사의 공적 책임) ①공사는 이 법에 의한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한다.</p> <p>②공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공사는 시청자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프로그램·방송서비스 및 방송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한다.</p> <p>④공사는 국내외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p>
	<p>제45조(정관의 기재사항)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 적 2. 명 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공사의 조직과 임원·이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시청자불만처리 및 시청자보호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사채발행 및 차입에 관한 사항 10. 주식 또는 출자증권에 관한 사항 11. 손익금의 처리 등 회계에 관한 사항 12.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3.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p>②공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방송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제46조(임원) ①공사에 임원으로서 사장 1인, 부사장 1인, 상임이사 3인 및 감사 1인을 둔다.</p> <p>②사장은 방송위원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p> <p>③감사는 방송위원회에서 선임한다.</p> <p>④부사장 및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명한다.</p>
	<p>제47조(임원의 임기) ①사장, 부사장, 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p> <p>②임원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궐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③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p>
	<p>제4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3. 정당법에 의한 당원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p>제49조(임원의 직무) ①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p> <p>②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대행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③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50조(임원과 직원의 직무상 의무) ① 공사의 임원은 공사와 거래를 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p> <p>②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p> <p>③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51조(이사회 설치 및 운영) ① 공사는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p> <p>②이사회는 사장·부사장 및 상임이사 3인과 방송위원회가 선임하는 비상임이사 6인을 포함하여 11인의 이사로 구성한다.</p> <p>③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되고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사장과 부사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대행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p> <p>⑤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⑥비상임이사의 임기·결격사유 및 직무상 의무에 대해서는 제47조·제48조 및 제50조제1항·제3항의 임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52조(이사회 기능) ①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이념구현에 관한 사항 2.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기본운영계획 3. 예산·자금계획 4.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5. 결산 6. 공사의 경영평가 및 공표 7. 지역방송국의 설치 및 폐지 8.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9.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 10. 손익금의 처리 11. 다른 기업체에 대한 출자 12. 정관의 변경 13. 공사의 기본이 되는 내규의 제정 및 개폐 14. 기타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이사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에게 공사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p>
	<p>제53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p>
	<p>제54조(업무) ① 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2. 라디오방송의 실시 3. 텔레비전방송의 실시 4. 위성방송 등 새로운 방송매체를 통한 방송의 실시 5. 시청자불만처리와 시청자 보호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 6. 전속단체의 운영·관리 7. 방송문화행사의 수행 및 방송문화의 국제교류 8. 방송에 관한 조사·연구 및 발전

	<p>9. 제1호 내지 제8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p>
	<p>②공사는 정부의 요청으로 국가가 필요로 하는 방송(국제친선 및 이해증진과 문화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대외방송과 외국 및 북한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사회교육방송을 포함한다)을 위탁받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는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p>
	<p>제55조(회계처리) ① 공사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의한다.</p> <p>② 공사의 회계처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및 기업예산회계법을 준용한다.</p>
	<p>제56조(재원) 공사의 경비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충당하되, 목적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광고수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p>
	<p>제57조(예산의 편성) ① 공사의 예산은 사장이 편성하고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 발생한 운영계획의 변경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공사의 사장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준예산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준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이를 당해년도의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p>

	<p>제58조(운영계획의 수립) ①공사의 사장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당해년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당해년도의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월 이내에 방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59조(결산서의 확정) ①공사의 사장은 매 회계년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전 회계년도의 결산서를 방송위원회 및 국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의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 <p>③방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공사의 결산을 총괄하여 6월 3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④감사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결산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9월 30일까지 방송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p>
	<p>제60조(부동산의 취득등의 보고) 공사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취득할 당시의 목적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방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61조(보조금등)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으며 공사의 사채를 인수할 수 있다.</p>

	<p>제62조(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공사의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수요물자의 구매나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제63조(감사) ①공사의 감사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한다. ②내부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감사가 이를 실시한다. ③공사의 회계처리에 관한 외부감사는 감사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이 이를 실시한다. 다만 방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원과 협의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의무)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p>
	<p>제65조(수신료의 결정)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징수한다.</p>
	<p>제66조(수신료 등의 징수) ①공사는 제 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신료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p>

	<p>②공사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하여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p> <p>③공사는 제65조의 수신료와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금 또는 추징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p>
	<p>제67조(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① 공사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②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판매인·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p> <p>③공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p>
	<p>제68조(수신료의 사용) 공사는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수신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p>
<p>제5장 방송국의 준수사항</p>	<p>제5장 방송사업의 운영등</p>
<p>제30조 (시청자위원회) ①방송국은 방송순서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개정 90·8·1></p> <p>②방송국의 장은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개정 90·8·1></p>	

<p>③시청자위원회는 보도에 관한 방송을 제외한 방송순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심의결과에 따라 방송국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필요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90·8·1〉</p> <p>④방송국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p> <p>⑤방송국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0·8·1〉</p> <p>⑥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90·8·1〉</p>	
<p>제30조의2 (자체심의) 방송국은 그 내용에 방송순서를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어야 하며, 보도에 관한 방송순서를 제외하고는 방송순서가 방송되기 전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0·8·1〕</p>	
<p>제31조 (방송순서의 편성등) ①방송순서의 편성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이익이 균형있게 적정한 비율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②방송국은 방송순서의 편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양 또는 교육·보도 및 오락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그 종류에 따라 방송순서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방송의 방송순서편성에 있어서는 허가받은 주된 방송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0·8·1〉</p>	<p>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①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 공정성·공공성·다양성·균형성·사실성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사항이 균형있게 적정한 비율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③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있어서 방송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도·교양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야 하고, 그 방송프로그램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여야 한다.</p>

<p>③방송국은 방송순서의 편성에 있어서 외국에서 수입한 방송순서가 전체방송순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편성하여야 하며, 국내에서 당해 방송국이 아닌 자가 제작하는 방송순서가 전체방송순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이 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신설 90·8·1〉</p>	<p>이 경우 방송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주시청시간대(이하 "주시청시간대"라 한다)에는 특정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이 편중되어서는 아니된다.</p> <p>④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방송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p> <p>⑤한국방송공사 및 특별법에 의한 방송사업자,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출자한 방송사업자 및 그 방송사업자가 출자한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⑥한국방송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p>
	<p>제70조(채널의 구성과 운용)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특정방송분야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다양성이 구현되도록 방송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널을 구성·운용하여야 한다.</p> <p>②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방송채널을 직접 사용하거나 당해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 또는 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채널을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③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하 "공공채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p>

	<p>④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정보 및 방송프로그램 안내와 공지사항 등을 제작·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하여야 한다.</p> <p>⑤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프로그램 안내와 공지사항 등을 제작·편성 및 송신하는 공지채널을 운용할 수 있다. 다만, 공지채널의 경우에는 보도·논평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은 송출할 수 없다.</p> <p>⑥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운용할 수 있는 채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⑦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채널 또는 공공채널을 통하여 방송하여야 한다.</p>
	<p>제71조(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의 전체 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p> <p>②방송사업자는 연간 방송되는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중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p> <p>③방송사업자는 국제문화 수용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중 한 국가에서 제작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p>

	<p>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p>
	<p>제72조(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p> <p>①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의 전체 방송 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가 아닌 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이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p> <p>②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주시청시간대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p>
<p>제32조 (편성책임자등) ①방송국의 장은 편성책임자 및 광고책임자를 방송순서의 분야별로 선임하고 그 성명을 방송시간 내에 매일 1회이상 공표하여야 한다.</p> <p>②편성책임자 또는 광고책임자가 그 사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그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p>	
<p>제33조 (대외방송) ①대외방송의 편성 및 방송 또는 외국의 방송국에 제공할 방송순서의 편성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올바른 인식을 주는 동시에 국제친선 및 이해증진과 문화·경제 교류의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방송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그 대외방송 계획서를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89·12·30, 98·2·28〉</p>	
<p>제34조 (교육방송) 교육방송의 편성 및 방송에 있어서는 그 방송의 대상으로 하는 자를 명확히 하고 내용을 유익·적절하게 조직적·계속적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그 방송의 계획을 사전에 공공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방송순서가 학교교육을 위한 것인 때에는 그 내용이 학교교육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p>	
<p>제35조 (광고방송) ①방송국이 광고방송을 하는 때에는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구분하여야 한다. ②광고방송의 시간과 회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광고방송에 의한 수익은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진흥사업 및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90·8·1〉 ④삭제 〈90·8·1〉</p>	<p>제73조(방송광고등) ①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②방송광고의 시간·회수 또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의 경우에는 당해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물은 이를 방송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④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방송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⑤지상파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74조(협찬고지) ①방송사업자는 방송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협찬고지를 할 수 있다. ②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p>
	<p>제75조(재난방송) ①종합편성 또는 보도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진·태풍·홍수 등의 재해 또는 재난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등 긴급한 사태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을 하여야 한다. ②방송위원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기타 공공복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재난방송을 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합편성·보도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방송을 하여야 한다. ③방송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재난방송에 관한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p>
	<p>제76조(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방송사업자는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할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없이 제공하여야 한다.</p>
	<p>제77조(유료방송의 약관 승인) ①유료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이용요금 및 기타 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방송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용요금에 대하여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방송위원회는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이 현저히 부당하게 되어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p>
	<p>제78조(재송신)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지상파방송(라디오방송을 제외한다)을 수신하여 그 방송프로그램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동시에 재송신(이하 "동시재송신"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당해 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안에 당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시재송신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69조의 동시중계방송권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③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당해 방송구역 이외에서 허가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지상파방송을 동시재송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④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외국의 방송사업자(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가 행하는 방송을 수신하여 재송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⑤제3항 및 제4항의 승인의 요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79조(유선방송국설비등에 관한 기술기준과 준공검사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유선방송국설비(종합유선방송국 및 중계유선방송·음악유선방송을 행하기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전송·선로설비의 분계점 등에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p> <p>②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까지 유선방송국설비를 설치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치한 유선방송국설비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p> <p>③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전송·선로설비를 자체적으로 설치하거나 전송망사업자의 전송·선로설비 또는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전송·선로설비를 상호 이용할 수 있다.</p> <p>④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까지 유선방송국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설비설치기한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p>

	<p>제80조(전송·선로설비 설치의 확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전송·선로설비를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때 또는 전송망사업자나 기간통신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나 중계유선방송사업자와 전송·선로설비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송·선로설비를 설치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설치한 전송·선로설비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p>
	<p>제81조(설비개선명령등) 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가 설치한 유선방송국설비 및 전송·선로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시설의 보수·개수·이전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제82조(전송·선로설비의 이용) 전송망사업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송·선로설비이용료 기타 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제36조 (방송내용의 보존) 방송국의 장은 공표사항의 녹음 또는 녹화의 원본 또는 사본을 공표후 1월간 보존하여야 한다.</p>	<p>제83조(방송내용의 기록·보존) 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일지를 비치하여 방송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송실시결과를 방송후 1월 이내에 방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방송사업자는 방송(재송신을 제외한다)된 방송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방송후 6월간 보존하여야 한다.</p>

통합방송법 제정입법건의견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일지의 기록 및 방송실시결과와 제출시기 등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별 방송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의 보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p>
<p>제37조 (개국·휴업·폐업의 신고) 방송국을 개국하였거나 24시간이상 방송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89·12·30, 98·2·28></p>	<p>제84조(폐업 및 휴업 등의 신고) 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그 업무를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위원회 및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②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위원회 및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 및 휴업의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p>
<p>제38조 (월례보고) 방송국은 방송일지를 비치하여 매일 방송된 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매일 정기적으로 방송실시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89·12·30, 98·2·28></p>	
	<p>제85조(방송프로그램별 유료방송등의 적용예외) 방송프로그램별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제71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39조 (외국지사등의 설치)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국을 신고한 방송국이 외국에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89·12·30, 98·2·28></p>	

<p>제40조 (외국방송국의 국내지사등의 설치) ① 외국방송국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89·12·30, 98·2·28〉</p> <p>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외국방송국의 지사 또는 지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89·12·30, 98·2·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을 때 2.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당해 외국방송국이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의 위신을 손상하게 하는 기사를 방송한 때 	
<p>제40조의2 (외국방송순서의 수입추천) 외국에서 제작된 방송순서를 방송을 목적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방송국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수입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도에 관한 방송순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8·2·28〉</p> <p>[본조신설 90·8·1]</p>	
<p>제6장 침해에 대한 구제</p>	<p>제6장 시청자의 권익보호</p>
<p>제41조 (반론보도청구권) ①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이 내에 방송국에 서면으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실보도가 있는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5·12·30〉</p>	

②반론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날인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의대상인 보도내용과 방송을 요청하는 반론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5·12·30>

③방송국이 반론보도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무료로 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아니하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방송을 거부할 수 있다.<개정 95·12·30>

④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개정 95·12·30>

⑤반론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95·12·30>

⑥방송국이 행하는 반론보도는 그 공표가 행하여진 동일한 방송주파수에 의하여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95·12·30>

⑦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방송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신설 95·12·30>

	<p>제86조(자체심의) 방송사업자는 그 내부에 자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어야 하며, 방송프로그램(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이 방송되기 전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p>
	<p>제87조(시청자위원회) ①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는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방송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p> <p>③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8조(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①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4.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p>②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p>
	<p>제89조(시청자 평가프로그램) ①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당해 방송사업자의 방송운영과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당 60분 이상의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p>

	<p>②시청자 평가프로그램에는 시청자위원회가 선임하는 1인의 시청자평가원이 직접 출연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p> <p>③방송위원회는 시청자평가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90조(방송사업자의 의무) ①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p> <p>②시청자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의 수용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방송위원회에 시청자불만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p> <p>③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가 제88조제1항 각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답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④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방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⑤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요구하는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p>
	<p>제91조(반론보도청구권) ①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방송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반론보도청구권은 당해 방송이 행해진 날부터 6월이 경과함으로써 소멸된다.</p>

②반론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주소를 기재하며, 이의 대상인 보도내용과 반론보도를 요청하는 반론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방송사업자는 반론보도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요구받은 날부터 9일 이내에 무료로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와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

④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실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한정되며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⑤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반론보도는 그 공표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및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하며 반론보도문은 자막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어야 한다.

⑥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방송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⑧방송에 의한 분쟁의 중재 및 심의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가 이를 행하며, 그 절차에 관한 사항과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항 및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법제18조·제19조·제19조의2·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p>제42조 (다른 법률의 준용) 방송에 의한 분쟁의 중재와 그 절차에 관한 사항과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항 및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 관한법률 제1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95·12·30〉</p>	
	<p>제7장 방송발전의 지원</p>
	<p>제92조(방송발전의 지원) ①정부는 국민이 다양한 방송을 균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문화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기술 및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제93조(방송프로그램의 보관 및 활용)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수집·보관·유통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방송프로그램보관소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할 수 있다.</p>
	<p>제94조(방송전문인력의 양성등) 정부는 방송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교육기관 및 방송관련학과 등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p>
	<p>제95조(방송제작단지 조성·지원) ①정부는 방송사업자가 공동으로 방송제작단지를 조성하는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제작단지가 정보통신단지 또는 영상제작단지 등과 연계·운영되도록 할 수 있다.</p>

	<p>제96조(방송프로그램 유통등 지원)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영상·비디오 등 영상물이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되어 방송매체별로 다단계로 유통·활용 또는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p> <p>②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기술 및 시설의 개발·활용 및 수출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p>
	<p>제97조(방송의 국제협력) 방송위원회 또는 정부는 외국의 방송관련기관·단체와의 국제교류,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 방송전문인력의 상호교류 및 방송기술의 공동개발 등 국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4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90·8·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순서의 편성·제작이나 방송국의 운영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한 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의 출연을 받은 방송국의 장 5.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6.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 외국방송국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자 	
<p>제4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9·12·30, 90·8·1, 98·2·28〉</p>	

통합방송법 제정입법건의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방송국의 장 또는 편성책임자로 취임한 자 2. 제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편성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 선임한 방송국의 장 3.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대외방송을 한 자 	
<p>제44조의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 또는 제4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본조신설 90·8·1]</p>	
<p>제45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90·8·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법인의 재산상황을 공고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정사항의 이행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순서를 편성한 자 4.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성책임자등을 공포하지 아니한 방송국의 장 5.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개국·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월례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p>7.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외국에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자</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89·12·30, 98·2·28〉</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고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89·12·30, 90·8·1, 98·2·28〉</p> <p>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89·12·30, 98·2·28〉</p> <p>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p>	
<p>제7장 벌 칙</p>	<p>제8장 보 칙</p>
	<p>제98조(자료제출) ①방송위원회 또는 정부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②방송사업자는 매년말 당해 법인의 재산상황을 방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방송위원회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p>

	<p>제99조(시정명령등) ① 방송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법 또는 허가조건·승인조건·등록요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부당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p>② 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다)·전송망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설치한 시설이 이 법 또는 허가조건·등록요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p>
	<p>제100조(제재조치등) ① 방송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제33조의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7조제8호의 시청자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청자에 대한 사과 2.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중지 3. 방송편성책임자 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p>②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명령내용에 관한 방송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방송하고,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한 후 그 결과를 방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③방송위원회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의 제재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p> <p>⑤방송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의 재심결과를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101조(청문)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허가 또는 재허가 추천을 거부하는 경우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p>제102조(수수료) 이 법에 의한 추천·허가·승인·등록, 변경허가·변경승인·변경등록, 재허가 신청을 하는 자와 유선방송국설비 및 전송·선로설비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제10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전파법에 의한 무선국관리사업단에 위탁할 수 있다.</p> <p>②방송위원회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물의 사전심의에 관련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기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10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방송위원회의 위원 또는 사무처의 직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와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p>
	<p>제9장 벌 칙</p>
	<p>제10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 편성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한 자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하여 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음악유선방송사업·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전송망사업을 행한 자 3. 제9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음악유선방송사업·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전송망사업을 행한 자
	<p>제10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 편성규약을 제정하지 아니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을 경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 3.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은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등록을 한 자 5.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7.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의 제재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제10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5조 또는 제10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p>
	<p>제108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책임자의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규정을 위반하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폭력·음란물을 방송한 자 4.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5. 제69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6. 제70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널을 구성·운용한 자

7. 제70조제5항의 단서규정에 위반하여 채널을 운용하거나,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을 위반하여 채널을 운용한 자
8.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별한 이유없이 시청자가 자체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하지 아니한 자
9. 제7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10. 제7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성비율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11. 제73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광고를 한 자
12.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협찬고지를 한 자
13.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유료방송을 한 자
14.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시재송신을 하지 아니한 자
15. 제78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송신을 한 자
16. 제79조제2항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준공검사 또는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17. 제8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송망사업을 행한 자
18.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일지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또는 방송실시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9.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20.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하거나 휴업한 자
 21.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휴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2. 제8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체심의 기구를 두지 아니하거나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하지 아니한 자
 23.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자
 24.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지 아니한 자
 25.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답변을 거부한 자
 26. 제9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방송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27.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반론보도 내용을 공표하지 아니한 자
 28.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황을 공고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9.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방송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방송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고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p>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한 때에는 그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p> <p>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p>
부 칙	부 칙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폐지된 언론기본법을 다른 법률에서 준용 또는 인용한 경우에 방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준용 또는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송법 2. 종합유선방송법 3. 한국방송공사법 4. 유선방송관리법
<p>제3조 (경과조치)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구성하여야 하며, 폐지된 언론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방송위원회와 방송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구성되는 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p> <p>②이 법 시행당시 폐지된 언론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방송국 및 설치된 방송자문위원회와 허가된 외국방송국의 국내지사 또는 지국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설치 또는 허가된 것으로 본다.</p>	<p>제3조(방송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p> <p>①이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일 30일 전까지 구성하여야 한다.</p> <p>②이 법에 의한 방송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종전의 방송법에 의한 방송위원회 또는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위원회는 해체된 것으로 본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종전의 방송법에 의한 방송위원회 또는 종전의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직무는 방송위원회가 행한다.</p>

<p>③이 법 시행당시 외국에 설치된 지사 또는 지국은 이 법 제39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④제25조 내지 제29조의 시행당시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텔레비전수상기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수상기로 본다.</p> <p>⑤이 법 시행당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방송법인이 발행한 주식이나 지분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p>	
	<p>제4조(한국방송공사의 정관 등에 관한 경과 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후 3월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p> <p>②이 법 시행 당시 수신료의 금액은 이 법 제65조에 의한 국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p> <p>③이 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는 종전의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p>
	<p>제5조(한국방송공사의 임원·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한국방송공사의 임원 및 이사는 이 법 시행후 2월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되어야 한다.</p> <p>②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방송공사의 이사를장을 포함한 이사는 이 법에 의한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p> <p>③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부사장 및 감사는 이 법에 의한 후임자가 선임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p>

	<p>제6조(공익자금 및 공익자금관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조성 및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익자금은 이 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가 조성 및 관리·운영하는 방송발전기금으로 본다.</p> <p>②이 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종전의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의한 공익자금관리위원회는 해체된 것으로 본다.</p>
	<p>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송법·종합유선방송법·유선방송관리법 또는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하여 행정처분 등 행정기관·방송위원회·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행위와 각종 신고 등 행정기관·방송위원회·종합유선방송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위로 본다.</p> <p>②방송위원회는 이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승인을 별표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유예할 수 있다.</p> <p>③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제2항의 유예기간 동안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방송을 녹음·녹화하여 재송신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④제9조제4항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p>
	<p>제8조(방송사업 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전파법에 의하여 방송국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p>

	<p>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국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로, 프로그램공급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자로, 전송망사업 지정을 받은 자는 이 법 제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 본다.</p> <p>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하여 유선방송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음악유선방송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자는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악유선방송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본다.</p> <p>④이 법 시행 당시 전광판방송을 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광판방송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p>
	<p>제9조(방송사업자의 소유제한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 당시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종전의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보도프로그램공급업을 행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한도내에서 주식 또는 지분을 계속 소유할 수 있다.</p>

	<p>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송법 또는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하여 방송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과 그 계열기업(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에 해당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한도내에서 주식 또는 지분을 계속 소유할 수 있다.</p> <p>③이 법 시행 법률 제5529호 방송법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조항에 의하여 이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한도를 초과하여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범위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을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다.</p>
	<p>제10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방송법·종합유선방송법·한국방송공사법 또는 유선방송관리법의 규정에 의한다.</p>
<p>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영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제4항중 “언론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방송심의위원회”를 “방송법에 의하여 설치된 방송위원회”로 한다.</p>	<p>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부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1. 제35조제1항 중 “방송행정·출판”을 “영상·광고·출판”으로 하고, 부칙 제4조를 삭제한다.</p> <p>②국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7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0. 문화관광위원회 가. 문화관광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방송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③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에 제1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127. 방송법</p>

	제1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방송법·종합유선방송법·한국방송공사법 또는 유선방송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 칙 <90·8·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장(제25조 내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청자위원회의 구성) 제3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구성되어야 한다.	
③(방송법인등의 주식소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방송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의 소유한도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그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범위안에서 동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방송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구성하여야 하며, 종전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방송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행한다.	

통합방송법 제정입법의견

부 칙 <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95·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98·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연구보고 99-05
통합방송법 제정입법의견

1999년 10월 25일 印刷
1999년 10월 30일 發行

發行人 徐承完
發行處 **한국법제연구원**
印刷處 東亞商社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90-4
전화 : (579)0090, 0308
등록번호 : 1981.8.11. 제1-a0190호

값 7,000 원

- 本院의 승인없이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ISBN 89-8323-105-X 93360

